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지역학 박사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경험이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2023년 8월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지역 · 어문학과

허 영 희

국제지역학 박사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경험이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강 경 태

이 논문을 국제지역학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지역 · 어문학과

허 영 희

허영희의 국제지역학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위원장 이 권 호



위원 박 병 철



위원 강 성 훈



위원 유 영 달



위원 강 경 태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감사의 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하여주시고 박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세심히 지도해 주시고 놀라운 지식과 영감을 주신 강경태교수님, 이권호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논문이 완성되도록 격려해 주시고 저의 능력을 믿어주시고 가르치심을 주신 강성훈교수님, 박병철교수님, 유영달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진심 어린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제 연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셨던 전동진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에게 돌려주신 사려 깊은 조언과 가르침은 저의 학문적인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수님들과 함께 한 시간은 저의 인생에서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논문이 완성되기 까지 석사과정에서 기초를 닦아주신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님이시었던 최선화교수님, 아영아교수님, 한지나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저에게 많은 지도와 가르치심을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박사의 꿈을 꿀 수조차 없었던 저에게 학문의 길을 열어주신 대한민국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꿈결에도 보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그리운 부모님과 언니 동생들에게 이 글을 드립니다.

늘 옆에서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저의 길을 지켜주시던, 대한민국에서 원 없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아보라고 등을 떠밀어 주던, 그리고 지금은 별이 된 사랑하는 당신,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 한 그날부터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신 부산인권상담센터 원형은대표님, 이규희소장님, 부산시청 강정순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논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논문이 완성되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시간적 여유를 마련해 주신 진솔재가센터 이정희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시작과 끝의 완성을 볼 수 있도록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이 감사하는 마음을 영원히 잊지 않고 제가 받아온 사랑을 저와 같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과 함께 오늘의 이 결실이 끝이 아닌 새로운 학문의 시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허영희 드림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경험이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허 영 희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지역·어문학과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을 높이기 위한 개입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 및 피해경험이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연구대상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며, 표집방법은 유의표집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해 2023년 1월~2월 두 달 동안 자료를 수집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389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한 35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T검증, 교차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350명 중 여성 83.4%(292명), 남성 16.6%(58명)이다. 연령은 40대가 41.4%(145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가 32.9%(115명), 30대가 15.4%(54명) 60대가 27.5%(25명), 20대가 3.1%(11명) 순위로 나타났다. 결혼형태는 기혼 및 동거가 185명(52.9%)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이혼, 별거, 사별 125명(35.7%)으로 두 번째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 40명(11.4%)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은 배우자와 자녀같이 29.1%(10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녀와 같이 26.9%(94명), 본인 혼

자 21.1%(74명), 배우자와 같이 17.1%(60명), 부모와 같이 4.0%(14명), 기타 1.8%(6명) 순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경험에 대한 기술통계에서는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62.9%, 220명) 목격경험(44.9%, 157명)보다 더 많이 나타났으며, 남한에서의 피해경험은 전체 응답자 중 72.0%(252명)로 나타나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보다 약 10%가량 더 높은 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를 보면 첫째,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과 피해경험은 한국사회적응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 경험의 높을수록 한국사회적응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경험은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 경험의 높을수록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유의미하게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한국사회적응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높을수록 한국사회적응이 유의미하게 더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넷째,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 경험과 한국사회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 경험은 한국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거쳐 한국사회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 경험은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이는 다시 한국사회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목격경험, 가정폭력피해경험, 한국사회적응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제2절 연구의 차별성	6
제2장 선행연구 분석	8
제1절 북한이탈주민	8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및 현황	8
2.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	14
3.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	22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경험	26
1. 가정폭력 개념 및 유형	26
2.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현황	28
제3절 가정폭력경험과 한국사회적응과의 관계	29
1. 북한에서의 가정폭력목격경험과 한국사회적응과의 관계	29
2.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한국사회적응과의 관계	31
제4절 북한가정폭력경험과 남한가정폭력 경험과의 관계	32
제5절 남한가정폭력 경험과 한국사회적응과의 관계	33
제3장 연구설계 및 방법	36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	36
제2절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37

제3절 측정도구	38
제4절 자료 분석	42
제4장 연구결과의 분석	44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4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4
2. 북한이탈주민 특성 교차분석	48
제2절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56
제3절 가정폭력경험 및 한국사회적응 특성	58
1.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경험	58
2. 가정폭력경험 및 한국사회적응의 평균차이	59
제4절 가설검증	69
1. 가정폭력 경험이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70
2. 북한가정폭력 경험이 남한가정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	71
3. 남북한가정폭력 피해경험이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72
4.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74
제5장 결론 및 제언	76
제1절 분석결과의 고찰	76
제2절 제언	82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86
참고문헌	88
Abstract	99

부록:설문지102

<그림 목차>

<그림 3-1> 연구모형	36
<그림 4-2> 연구모형의 회귀계수	75

<표 목차>

<표 2-1>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현황	10
<표 2-2> 연령대별 입국현황	10
<표 2-3> 재북 직업별 현황	11
<표 2-4> 재북 학력별 입국현황	11
<표 2-5> 재북 출신지역별 입국현황	12
<표 2-6> 지역별 거주 현황	13
<표 2-7> 북한이탈주민 정착 현황	13
<표 2-8>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	14
<표 3-1> 가정폭력 목격경험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39
<표 3-2> 가정폭력 피해경험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39
<표 3-3> 남한가정폭력 피해경험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40
<표 3-4> 한국사회적응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41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6
<표 4-2> 성별에 따른 북한학력 차이	49
<표 4-3> 성별에 따른 남한학력 차이	50
<표 4-4> 성별에 따른 건강상태	50
<표 4-5> 성별에 따른 결혼형태	51
<표 4-6> 성별에 따른 직업유무	52
<표 4-7> 성별에 따른 가구경제형태	52

<표 4-8> 성별에 따른 거주형태	53
<표 4-9> 성별에 따른 소득상태	53
<표 4-10> 연령에 따른 건강상태	54
<표 4-11> 연령에 따른 소득상태	55
<표 4-12> 입국 기간에 따른 소득상태	56
<표 4-1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58
<표 4-14> 조사대상자의 가정폭력 경험	59
<표 4-15>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차이	60
<표 4-16> 학력에 따른 주요 변수의 평균차이	60
<표 4-17> 종교 유무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61
<표 4-18> 동거인 유무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62
<표 4-19> 직업 유무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63
<표 4-20> 결혼 형태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64
<표 4-21> 연령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65
<표 4-22>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66
<표 4-23> 건강 상태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67
<표 4-24> 주거 형태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68
<표 4-25> 가구 월소득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69
<표 4-26> 북한가정폭력 경험이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71
<표 4-27> 북한가정폭력이 남한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	72
<표 4-28> 북한과 남한가정폭력경험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73
<표 4-29> 간접효과 크기 및 유의성 검증	7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현재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33,882명에 달한다(통일부, 2022.12.31 기준). 분단 이후 북한을 탈북하여 한국에 온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었으며 일반주민들은 상상조차 힘들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탈북자의 가족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였기 때문에 탈북에 대해 생각할 수 없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 반복된 가뭄과 홍수피해로 흉년이 들어 배급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중국 친척집에 며칠 머무르면서 식량을 구하고 다시 북한에 되돌아가는 방식으로 탈북이 이루어졌다(최민영 외, 2015).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되기 시작된 것은 1985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84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내린 집중 호우로 서울은 홍수가 일어나 사망 및 실종 189명, 이재민 35만 여명, 부상 153명으로 1333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게 되는 강력한 홍수사태가 일어났다(통일부, 2020). 그 당시 북한에서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도 전쟁원호미로 22호 창고를 만들어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식량을 저축하고 있었다(탈북자 증언, 2020). 북한은 한민족의 아픔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동포애와 인도주의 입장에서 쌀 5만석과 옷감 50만 미터, 시멘트 10만 톤, 기타 의약품 등 구호물자를 보내주었다(통일부, 2020). 북한의 식량난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북한은 1985년부터 2호미(전쟁에 대비한 식량)가 사라져 가기 시작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제때에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한 달, 두 달 밀려 주기 시작하였다. 북한주민들은 근 40년 동안 배급제도에 익숙한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배급이 중단되는 것은 커다란 타격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배급제도가 원상복귀 되어 가고 있을 때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나라들이 붕괴하면서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경제교류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되었다.

1990년 초반에 들어서면서 극심한 식량난이 시작되었으며 식량가격은 시간당 뛰어오르는 북한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람들은 집안에 돈이 될 만한 물품을 시장에서 식량으로 바꾸었다. 모든 것은 식량가격을 기준으로 값이 정해졌다. 이러한 식량위기는 1990년대 300만 명이 굶어 죽는(대경일보, 2023)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식량구입에 나서게 되었다.

처음에는 농촌에서 식량을 구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인근 나라에서 식량을 구하거나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 탈북하기 시작하였다. 시장에 굶어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북한당국은 탈북을 막을 수 있는 정당성을 잃게 되었다. 초유의 식량난은 마음대로 외국을 드나들 수 없었던 북한주민들에게 처음으로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식량난으로부터 시작된 탈북 행렬은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남북의 차가운 얼음을 깨고, 굳게 닫혀있던 장벽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3만 3천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남한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하여 정착금지원제도, 주거알선 및 주거지원금 제도, 취업과 관련하여 직업훈련수당 지급, 취업상담, 취업알선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통일부, 2021).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남한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있으며(여현철, 2015) 제3국에 또다시 재이주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1999년에 하나원이 개원되어 2019년 개원 2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2023년 현재 24년의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여전히 북한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입국 기간이 길다고 하여 한국사회에 잘 적응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은 오히려 입국기간이 길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허영희, 2016)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정착을 위한 새로운 방향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들의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박종철 외, 1996) 사회부적응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남북의 통합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중대한 과정이 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을 떠나 제3국을 거쳐 탈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폭력을 경험하는 국가¹⁾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사회에서 생활하는 과정에 가정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폭력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들이 많은 이유도 가정폭력과 연관되어 있다(이애란, 2010). 북한에서는 “여자와 명태는 때려야 한다”는 말이(박정순, 2014) 있을 정도로 가정폭력이 정당화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폭력이 일어난 경우에도 사회의 책임이나 가해자의 잘못이 아닌 피해자의 탓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는 자책감으로 함부로 폭력을 당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없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권리보장법 제6장 제46조, “가정폭행의 금지” 법에서 “가정에서는 여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폭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정폭행을 막기 위한 주민들과 중업원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 관할지역 또는 자기 소속 공민²⁾들의 가정에서 가정폭행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여성권리보장법, 2020, 재인용)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국가와 당을 위한 범법행위는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지만 가정폭력을 비롯한 개인 간의 폭력이나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은 거의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오랫동안 노출되어 온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폭력에 시달려 왔으나(조성희·성정현·신은주, 2019) 국가나 사회에서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상태에서 살다가 탈북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폭력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가정폭력을 비롯한 폭력행동에 대해 장시간동안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학습되어 왔다(여성가족부, 2010).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은 재북 당시에 가정폭력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제3국에서 생활하는 과정에 인신매매, 강제결혼, 성폭력 등의 폭력을 직접경험하거나 간

1) 제3국(중국, 러시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라오스, 몽골 등)을 말한다.

2) 북한에서 일반국민을 이르는 말로 한국에서는 “국민”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공민”이라고 하며, “공민”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접경험을 하면서(조성희 외, 2019)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을 떠날 때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으로 가겠다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탈북을 하지만 실제 타국에서의 삶은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에 있다. 언어가 다르고 낯선 환경에서 국적이 보장되지 않는 불법체류의 위태로운 삶은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폭이 다양하지 않다. 식당이나 일터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언어소통의 문제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언제 복송될지 모르는 불안감에서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은 그들의 안전을 조금이나마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위안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 또한 대다수의 북한이탈여성들은 인신매매로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강요당하고 있다(생명과 평화공동체 사람들, 2018). 이러한 결혼생활은 북한이탈여성에게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무런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타국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감금, 신체적 폭행, 성폭행을 강요당하는 삶을 살았다.

셋째, 한국에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정폭력의 가해자·피해자로서의 직·간접경험을 하고 있다.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한경사회, 2010) 삶의 현실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가정폭력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가정폭력이라는 용어보다 가정불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라는 용어는 생소하게 느끼고 있다(분당신문, 2016).

북한이탈주민은 일반주민보다 북한사회에서의 결혼, 제3국 등에서 결혼, 한국사회에서 결혼 등 여러 국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유형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가정폭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한국에 입국하여 홀로 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3국에서 만난 배우자를 한국에 초청하여 재결합하여 살고 있거나 한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 폭력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조성희 외, 2019).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제3국에서 만난 배우자를 한국에 초청하여 살아가는 과정에 폭력에 시달리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이혼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그들로 부터 신체적 폭력은 물론 금전적 요구를 강요당하기도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배우자와 직계존속으로부터 차별과 무시를 비롯한 정서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정서적인 폭력은 오랫동안 가슴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는 북한에 직계가족, 배우자, 자녀를 두고 홀로 한국에 입국하여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주변에 가까운 친척이 없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노출되어도 선뜻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가정폭력은 개인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심리·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사회정착과 자녀양육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조성희 외, 2019). 2010년 여성가족부(문화일보, 2010)에서 진행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신체적 폭력은 일반가구 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유형의 폭력이 일반가구에 비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은 85.2%로 나타났고 폭력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51.3%, 정서적 폭력 75.7%, 경제적 폭력 43.8%, 성학대 33.6%, 방임 59.5%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가구와 비교하였을 때 모든 유형의 부부폭력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화일보, 2010).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정폭력 경험은 한국사회정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박정순, 2014). 가정폭력은 심리적 불안을 일으키는 동시에 분노와 좌절, 무기력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세대에 거쳐 전승될 수 있으며 사회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정순, 2013). 가정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자녀와 사회 전반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거나 범죄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박인선, 2002). 또한 가정폭력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 폭력으로 인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어 오랫동안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기도 한다(박진아·성은옥, 2018).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가정폭력을 가정 내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남아 있어 “맞을 짓을 했으니 맞지”라는 사회적 통념 속에 스스로 자책하면서 지속적인 폭력

에 시달리면서도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신민섭·오경자·홍강의·김태숙, 2014). 특히 북한이탈주민들 경우에 변화된 한국사회보다 북한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오랫동안 답습되어 온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정폭력을 스스로의 잘못으로 자책하면서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변에 가까운 친척이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정폭력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쉽게 결단을 내리기 힘들어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정착에 가정폭력이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 및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 및 기타 유형의 폭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남한에 정착한 이후에도 가정폭력은 일반가정에 비해 훨씬 더 높다는 점은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가정폭력 경험은 한국사회적응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가정폭력과 한국사회적응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연구는 실태조사 연구나 가정폭력의 심리적 심각성을 다루는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다.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은 한국사회적응의 목적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한국사회적응을 높이기 위한 개입지점으로 가정폭력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차별성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제별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상태에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북한이탈주민 법·제도와 관련된 연구, 둘째, 북한이탈주민 적응에 관한 연구, 셋째, 북한이탈주민 심리적응과 관련된 연구, 넷째, 북한이탈주민 교육에 관한 연구, 다섯째,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 및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 여섯째,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활동에 대한 연구, 일곱째,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여덟째,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관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대한 연구, 여성, 청소년, 남성 등의 대상에 따른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인권과 사회적 차별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가정폭력과 관련된 논문은 김경숙(2016), 조성희(2019), 박정순(2014), 최연우(2022) 등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의 가정폭력과 남한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하여 다룬 연구는 부족한 상태에 있다. 또한 남한주민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과 사회적응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경험과 남한에서의 가정폭력경험의 관련성과 함께 이러한 가정폭력경험이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 경험과 한국사회적응의 관계에서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제2장 선행연구 분석

제1절 북한이탈주민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및 현황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즉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귀순’의 개념을(통일부) 사용하였으나 법이 제정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90년대 이전에는 북한이탈주민이 한해에 10여명 정도 입국하였으나 90년대 중반에 들어서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탈북자들이 증가 하면서 ‘탈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허영희, 2017). 6.25전쟁으로 북한을 떠나 온 사람들과 자유를 찾아 월남한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로 ‘실향민’ (한국민속문화대백과사전, 2023)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53년 이후부터 ‘귀순용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는 현재 공식적인 법률용어로 사용되고(박종민 외, 2022) 있지만 “탈북자, 탈북동포, 탈북주민, 귀순자, 탈북난민, 탈북이주민, 새터민”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류주영, 2015).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꾼다는 의미에서 2005년부터 사용하다가 2008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공식적으로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류주영, 2015), 일각에서는 ‘새터민’ 용어를 선호하는 개인이나 단체도 있다(김성준, 2009).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지금까지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

었지만 현재 법률적 공식용어로 ‘북한이탈주민’ 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본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20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였다.

2) 북한이탈주민 현황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은 1990년부터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9년 최 정점을 찍다가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가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현재 북한이탈주민 입국이 거의 정지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임시적인 현상으로 코로나가 정상화되면 다시 입국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는 33,882명으로 집계 되었다(통일부,2023).

<표 2-1>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현황(2022.12월 말 입국자기준) (단위: 명)

구분	199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남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여	116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합계	947	1,042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여성 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남	06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여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5
합계	2,803	2,92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6
여성 비율	78%	77%	75%	70%	72%	76%	78%	80%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남	77	188	168	202	72	17	35	9,510
여	265	939	969	845	157	14	32	24,372
합계	342	1,127	1,137	1,047	229	31	67	33,882
여성 비율	77%	83.3%	85.2%	80.7%	68.6%	45.2%	47.8%	71.9%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2023.3)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연령은 30대가 9,719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20대가 9,601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2-2> 연령대별 입국현황(2022.12월말) (단위: 명)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이상	계
남	651	1,705	2,628	2,160	1,400	588	353	9,485
여	646	2,106	6,973	7,559	4,611	1,461	995	24,351
합계	1,297	3,811	9,601	9,719	6,011	2,049	1,348	33,836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2023.3)

Note: 입국당시 연령 기준이며,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있는 일부 인원은 제외된 수치로 입국인원과 차이가 있음.



북한에서의 직업현황은 무직부양이 15,170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노동자가 13,399명, 봉사분야가 1,553명으로 세 번째로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무직부양 분야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입국자수 중에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여성이 북한에서의 지위가 낮고 주부로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시장 활동을 하는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표 2-3> 재북 직업별 현황(2022.12월말) (단위: 명)

구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부양	봉사분야	예술체육	전문직	비대상(아동)	계
남	441	722	4,176	3,215	93	84	238	546	9,485
여	139	161	9,223	11,955	1,460	221	526	666	24,351
합계	550	883	13,399	15,170	1,553	305	764	1,212	33,836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2023.3)

Note: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있는 일부 인원은 제외된 수치로 입국인원과 차이가 있음(과거자료 정비 등으로 일부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북한에서의 재북 학력별 현황은 중·고등학교가 23,471명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대 3,537명, 대학이상 2,348명, 인민학교(초등학교) 2,305명 순위로 나타났으며 무학이 875명으로 2.6%는 무학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고등학교³⁾까지 무상의무교육이므로 무학인 경우가 없었지만 배급제도가 붕괴되면서 식량난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표 2-4> 재북 학력별 현황(2023.12월말) (단위: 명)

구분	취학전 아동	유치원	인민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이상	무학(복)	기타 불상등	계
남	418	135	806	5,743	857	1,126	360	40	9,485
여	404	215	1,499	17,728	2,680	1,217	515	93	24,351
합계	822	350	2,305	23,471	3,537	2,343	875	133	33,836

3) 북한은 2014년 이전까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고등중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2014년 이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하여 운영하였다.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2023.3)

Note: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일부 인원은 제외된 수치, 해당 학력별 중퇴자 포함. 과거자료 정비 등으로 일부 인원이 조정될 수 있으며, 기타 인원 중에 하나원 최근 입소인원의 학력 미 입력자 일부 포함.

북한이탈주민들의 출신지역별 현황을 보면 함경북도 19,852명, 량강도 6,013명, 함경남도 2,883명으로 국경연선 지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경연선은 지리적으로 탈북에 유리한 조건도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타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정보입수에도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5> 재북 출신지역별 입국현황(2022.12월말) (단위: 명)

구분	강원	남포	량강	자강	평남	평북	평양
남	224	75	1,558	78	460	379	482
여	377	89	4,455	165	655	507	345
합계	601	164	6,013	234	1,115	886	827
구분	함남	함북	황남	황북	개성	기타	계
남	777	4,853	270	185	46	98	9,485
여	2,106	14,990	203	285	33	132	24,351
합계	2,883	19,852	473	470	79	230	33,836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2023.3)

Note: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일부인원은 제외된 수치로 입국인원과 차이가 있음.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별 거주현황을 보면 경기도에 10,902명, 서울에 6,595명으로 수도권에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에는 896명으로 2022년 971명보다 75명 줄어들었으며 2016년보다 88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 되었으며 이는 해마다 부산에 북한이탈주민이 입주되지만 다시 수도권으로 재 이주하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전북, 전남 모두 북한이탈주민 수가 줄어드는 수치를 보이는 것은 ‘하나원’을 나와 지방에 거주지를 받았지만 다시 수도권으로 재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비수도권은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수도권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6> 지역별 거주 현황(2022.12월말 거주자 기준) (단위: 명)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대구	충북	충남· 세종
남	2,047	2,790	787	227	228	230	130	277	362
여	4,548	8,112	2,124	669	908	838	501	1,115	1,428
합계	6,595	10,902	2,911	896	1,136	1,068	631	1,392	1,790
지역	광주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남	117	222	125	147	113	117	77	7,996	
여	418	689	464	508	427	347	273	23,369	
합계	535	911	589	655	540	464	350	31,365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2023.3)

Note: 사망, 말소, 이민, 주소불명,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 제외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수준을 보면 2022년 북한이탈주민의 22.6%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으며 2017년에 비해 줄어든 수치로 3년 동안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가 2021년부터 다시 줄어든 수치를 보이고 있다. 경제수준에 비해 학업중단율이 2018년 2.5% 대비 2020년 2.9%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가 2022년 1.6%로 2020년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2-7> 북한이탈주민 정착 현황(2022.12월말) (단위: %)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생계급여 수급률	54.8	54.9	51.3	46.7	40.8	35	32.3	25.3
초·중·고 중도 탈락률	10.8	6.1	4.9	4.7	3.3	3.46	2.5	2
구분	'16	'17	'18	'19	'20	'21	'22	
생계급여 수급률	24.4	24.4	23.8	23.8	23.8	22.8	22.6	
초·중·고 중도 탈락률	2.1	2.0	2.5	3.0	2.9	1.2	1.6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2023.3)

Note: 학업중단율=(해당연도 학업중단자 총수/전년 재학생 총수)*100(교육부자료)

북한이탈주민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경제활동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8>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2022.12월말) (단위: %)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경제활동	49.6	48.6	42.6	56.5	54.1	56.9	55.4	59.4
참가율								
고용률	44.9	41.9	38.7	49.7	50	51.4	51.7	54.6
실업률	9.5	13.7	9.2	12.1	7.5	9.7	6.4	4.8
구분	'16	'17	'18	'19	'20	'21	'22	
경제활동	57.9	61.2	64.8	62.1	60.1	61.3	63	
참가율								
고용률	55	56.9	60.4	58.2	54.4	56.7	59.2	
실업률	5.1	7.0	6.9	6.3	9.4	7.5	6.1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2023.3)

2.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

북한이탈주민의 대표적인 탈북 동기는 식량난으로(김성준, 2009) 볼 수 있으나 개인에 따라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북한의 식량난과 북한의 인권, 가부장사회,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북한체제에 대한 불신 등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북한의 식량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경제적 위기에 들어서게 된다. 독일 통일과 구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교류가 무너지면서 국가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원자재를 공급하지 못하여(임강택, 2013)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최악에 이르게 되면서 경제적 붕괴는 북한의 식량재난으로 이어져 급기야 1990년 중반에는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성도현, 2022).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공동분배의 형식으로 배급 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며 북한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배급제도에 적응하며 생활하였다. 북한주민들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가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면서 국가의 배급제도에 의존하는 삶을 살았다(이애란, 2010). 그러나 1990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공급되던 배급이 한 달, 두 달, 밀려주기 시작하다가 급기야 1990년 중반에는 배급이 중단되는(류주영, 2015)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배급을 준다고 해도 명절을 계기로 3~4일 분을 공급하고 그것도 식량이 부족하여 먼저 공급받은 사람이 우선이고 공급하다가 식량이 떨어지면 나머지 주민들은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북한주민들은 극심한 식량위기를 맞게(이우영 외, 2000) 된다.

북한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배급제도에 적응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배급중단 현상은 커다란 재난으로 다가 갈 수 밖에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시장과 거리에 북한주민들의 시체가 누워 있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탈북자 증언), 이러한 심각한 식량난으로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형국에서 북한당국은 북한주민의 탈북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되었다.

북한은 김일성의 평생소원인 ‘이밥⁴⁾에 고기 국’을 먹인다는 소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주는 재앙을 만들었다. 탈북자 유씨의 증언(동아일보, 2023)에 의하면 1997년에 600명 농장에서 67명이 식량난으로 굶어 죽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들은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었지만 북한당국은 이들이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아파서 죽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참담한 현실은 어느 한 마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곳곳에서 사람이 쓰러지고 굶어 죽는 현상이 일어났으며 시장에서 굶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았다는 것은 북한 이탈주민으로 부터 많은 TV매체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1990년 이전 북한주민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북한을 탈북 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북한은 연좌제로 가족 중 한 사람의 범죄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가족 모두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탈북에 대해 꿈을 꿀 수 없었다. 그러나 심각한 식량난은 북한주민들에게 식량을 구하러 떠난다는 명목아래 탈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탈북 기회를 열어준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북한에서 ‘이밥’은 한국에서의 쌀밥을 말함.

(2) 북한의 인권

북한의 인권은 개인의 인권보다 집단주의를 강조하면서 개인의 권리보다 의무를 강조하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제약하고 집단이라는 명목 아래 국가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해 자유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최의철, 2002).

북한은 사회일탈⁵⁾ 행위를 했을 때에는 올바른 재판도 없이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주민들을 압박하고 공포정치로 인권을 짓밟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옥수수 몇 이삭을 훔친 대가로 공개처형을 당하고도 국가를 상대로 항의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억울한 처지에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다가 이리다 정말 온 가족이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탈북 한 북한이탈주민이 있다(북한이탈주민 최○○증언).

북한주민들은 생명권,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와 안정에 대한 권리, 피구금자의 권리, 이동 및 거주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종교의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참정권, 평등권 등 모든 권리가 박탈되었다(이규창·김수경·이지순·정은미·임예준, 2020). 북한주민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권리가 박탈되고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마음대로 자신의 불평등과 불합리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다. 몇 십 년 동안 북한주민들은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오면서도 이런 생활에 적응되어 쉽게 대응할 수 없었으며 또한 연좌제 때문에 자신의 위험보다 가족과 친척의 위험을 감수하기 힘들어 선불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북한주민의 참정권은 형식에 불과하다. 북한주민들은 강압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며 두개의 ‘찬성’, ‘반대’ 투표함에 자신의 의사가 전혀 반영될 수 없는 환경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찬성, 반대 투표함은 반 터치 가름막으로 가려져 있고 반 터치 가림 막 앞에 요원이 감시하고 있어 북한주민들은 민주주의 투표 형식이 무엇인지 인식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이규창, 2020). 북한에서는 후

5) 사회주의사회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보자를 국가가 정해 놓고 일반 주민들은 이러한 원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의 강압적인 선거제도는 100% 찬성, 100% 투표율이라는 전 세계에 없는 결과를 낳고 있다.

북한의 헌법 제164조는 피해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지 북한주민이 변호사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다. 피의자의 토대(성분)가 좋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 뇌물을 주는 경우에 재판에서 유리한 변론을 받았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규창 외 2020)이 있지만 일반인에게 이런 제도의 혜택이 주어지기는 쉽지 않다.

북한이탈주민 30대 염○○은 북송되어 북한구류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무릎을 꿇고 고정자세로 앉아있는 벌을 썼는데 졸고 있다고 매를 맞고 조금만 움직여도 사정없이 매를 맞기 때문에 순간의 움직임이 없이 앉아 있는 고문이 제일 힘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 50대 백○○은 구류장에서 얼굴이 하얗게 보인다고 ‘야 너 화장을 했어?’ 라고 하면서 쇠살창에 두 손을 모아 내밀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했더니 군화발로 손가락을 걷어차 손톱이 그 자리에서 빠져 나가는 등의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은 죄가 없어도 북한 전체가 창살 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세계정세와 국가의 정세를 사실대로 들을 수 없는 사회이다. 한 개인의 잘못으로 가족 전체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회, 옥수수 한 이삭에 목숨을 잃어야 하는 사회, 개인의 생명은 조금도 귀중하지 않고 오직 국가를 위해 수령을 위해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야 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북한 사회에서 능력 없고 힘없는 한 개인이 삶을 살아가기에는 북한의 인권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현실은 수많은 탈북자를 양산하게 된다.

(3) 가부장사회

북한이탈여성들은 재북 당시 가정폭력 피해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탈북 한 사례들이 많다. 북한이탈여성 최○○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에서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잠을 재우지 않고 폭력을 했으며, 외도여가 보는 앞에서 폭력을 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외도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에서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가정문제를 밖에 나가 이야기 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는 것이 뿌리깊이 자리 잡아 왔다. 때 맞는 것은 맞을 짓을 해서 맞는다는 인식이 있으며,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잘못된 통념으로 출가한 딸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해도 죽어도 시집 문턱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가치를 가지고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딸을 도와주지 않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살아왔다.⁶⁾

북한은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게 남아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오랜 관습으로 남아있다. 북한은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여맹)’이 성역할을 없애고(이규창 외, 2020)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비율 불균형(허영희, 2017)으로 북한인구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북한여성들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은 남녀평등이 한국보다 일찍 이루어졌으나 80년대 이후에 한국은 빠른 속도로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북한은 계속 답보 상태에 있다. 북한이탈남성들은 북한의 가부장제도에서 살다가 한국에 입국하여 북한에서보다 현저히 낮은 남성의 지위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지 북한에서 온 가족이 한국에 입국한 최○훈 가정은 북한에서의 삶의 방식대로 한국에서 아내를 폭력 하였으며 아내는 경찰에 신고하고 신체적 폭력에 관하여 사진증거자료를 남겨 두고 두 번 다시 폭력을 하는 경우 가정파탄이 일어난다는 두려움으로 남편은 신체적 폭력을 멈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토록 북한에서 여성의 지위는 낮고(제성호, 2007) 가정과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남성들이 가족부양을 하지 못하더라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밥그릇에 밥을 담을 때에도 남편의 밥을 제일 먼저 뜨고 그 다음 아들의 밥을 뜨고 나머지 아내와 딸의 밥을 떠야 한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있다. 남성은 남자다워야 하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하고, 여성은 착해야 한다, 딸이 없어야 한다 등의 가정교육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이규창 외, 2020).

북한에서 남성은 돈을 벌어들인 말든 남자는 직장을 다녀야 하며 가정경제는 여성이 책임을 지고 전적으로 도맡아 해야 한다. 여성은 경제를 책임짐과 동시

6) 북한이탈여성 상담·심리치유프로그램에서 북한이탈여성 최 ○ 화 의 상담내용.

에 자녀양육, 가사, 부모부양 등 여성이 짊어지고 가야할 삶의 무게(이규창 외, 2020)에 대한 것은 북한의 가요 ‘여성은 꽃이 라네’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속에 가족부양과 식량구입을 위한 장사 등 여성의 삶은 더욱 더 힘들어(이애란, 2010)지는 동시에 여성의 활동력이 활발해 지면서 북한사회에 대한 반감과 가부장제도에 불 순응 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탈북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 중 72%가 여성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4)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변화

북한은 중앙경제체제로 모든 경제활동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고 오직 중앙집권적 틀 안에서 계획되고 집행되어 왔다. 그러나 1985년 남한 수재민에 대한 무리한 지원과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영애, 2010)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경제적 지원이 끊어진 북한의 경제는 악재를 만나게 된다. 북한은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한 1990년대 중반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칭하였고,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북한주민 개인 스스로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며 수많은 북한주민이 자생력으로 살아가기 위해 장사를 하거나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등의 각자의 경제활동(류주영, 2015)이 시작되었다.

시장경제의 시작은 북한주민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첫째, 시장을 통하여 북한주민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북한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라고 지칭하면서 자본주의를 비방 하였지만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가르쳐주지 않았으며 무턱대고 나쁘다는 교육만 시켰다. 그러나 배급제도 붕괴는 북한주민 스스로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에서 주는 배급만 가지고 풍족하지 못한 생활을 하던 북한 주민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시장에서 장사를 하여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 배급제도 보다 훨씬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다.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는 심해졌지만 건강하고, 능력 있고 부지런하면 북한사회에서 장사를 하여 잘 살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싹을 틔워

주었다.

둘째, 시장은 정보공유의 장이 되었다. 북한은 체제유지에 최선을 다하여 북한 주민이 많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마다 수요일이면 수요강연회, 월요일이면 주체사상학습, 주말에는 생활총화 등 순간의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다른 사상이 침투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다(변선숙, 2021). 그러나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막을 길은 없었다. 통제를 한다 해도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오직 북한 당국의 사상을 침투하고 국가를 위한 경제활동을 할 때에만 만나고 사적인 만남은 가질 수 없었던 북한 사람들은 시장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사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남한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환상이 싹트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며 북한이 아닌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정보는 탈북동기를 유발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셋째, 시장은 새로운 계급을 생성했다. 능력에 따라 돈주(개인은행과 같은 의미)가 생기고 물건을 도매하는 도매상과 물건을 도매 받아 판매하는 새로운 계층이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이 자본주의 확산을 막으려고 만들어 낸 통제하는 계층과 통제받는 계층이 생기고, 두 계층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는 부정부패가 생성하면서 북한체제와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날로 높아지게 되었다.

(5) 북한체제에 대한 불신

배급제도가 붕괴되고 기존의 북한체제에서 보호를 받으며 의존적인 삶을 살던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장마당 세대가 생겨났다. 장마당 세대는 더 이상 북한체제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반세기 넘는 김일성, 김정일 주체사상이 북한주민들에게 멸건 죽물밖에 주지 않았다(탈북자의 증언)는 불만을 터놓게 된다. 또한 시장에서 안전원(경찰)의 통제를 받으며 쫓겨 다니다가 “저 꼴 보기 싫어 전쟁이나 꼭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하다가 안전원이 오자 “아무래도 우리가 이길 걸” 이라고 하면서 불만을 터놓기도 했다. 북한주민들은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속에는 한국에 대한 환상이 담겨져 있었으며 시장에서 질 좋은 남한 상품을 보면

서 한국에 대한 환상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북한에서는 일주일에 1회씩 정기적인 생활총회를 통하여 북한주민들을 통제하고 자본주의 사상이 물들지 않고 철저히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에 매혹될 수 있게 교육을 하고 있으며, 집단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도록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이면 학습, 강연회 등으로 숨 쉴 틈을 주지 않는 것 또한 북한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는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모든 자유가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농업인이면 자녀도 대대로 농사를 지어야 하며, 어촌에 있으면 대대로 어촌에서 일을 해야 하는 등 직업선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엄매임은 북한주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과 그러한 통제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사회는 권력사회이지만 돈은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양정훈, 2005), 일반인들이 노동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류층을 벗어날 수 없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류층들은 권력으로 더 많은 부를 소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북한에서 장사를 잘하면 어느 정도 잘 살 수는 있지만 자본주의 확산을 허용하지 않는 북한사회에서 장사로 높은 부를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권력층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비리를 통해 부를 창출하기에 알맞은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북한주민의 원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평생토록 남을 미워하는 증오교육을 받아온 북한이탈주민은(조용관, 2004) 북한사회에서 배운 그대로 남을 미워하는 증오를 가르친 북한사회 제도에 거꾸로 불신과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원인은 위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북한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탈북 원인의 또 다른 이유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남한 드라마는 한국에 대한 정보와 환상을 가지게 하였으며 실제 북한이탈주민 중에 남한 드라마를 보고 온 가족이 함께 탈북 한 북한이탈주민이 있다⁷⁾. 한국의 문화 예술을 통해 남한사

7) 북한이탈주민 (장 ○ 하) 은 북한에서 한국드라마 ‘풀 하우스’를 보고 멋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온 가족이 탈북 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12평 아파트에서 살

회에 대해 이해하고 환상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자녀들에게는 북한의 불평등과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벗어나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교육 시키면서 살아갈 희망을 안고 탈북 한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3.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

적응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적응이란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에 맞추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주변 환경과 생활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어학사전, 2023). 즉 환경을 자신에게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을 변화시켜 환경에 적합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하는데 자연환경인 경우에는 자신에게 어울리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자신을 사회에 어울릴 수 있게 변화시키는 것을 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 인간이 주류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작용한다. 임소희(2013)는 자기정체성과 문화정체성, 정신건강,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회문화적 적응은 새로운 환경, 가족생활과 일, 학교 등의 영역에서 문제처리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Berry, 1997). 한 개인이 주류사회의 문화와 규범 및 가치에 알맞게 적응한다는 것은 힘든 것으로 새로운 사회에 개인이 적응하는 것 보다 주류사회가 개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융합하고 포용하는 것이 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양정훈(2006)은 개인이 한 사회에 적응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보고 하였다.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적응이란 개인이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지만 무조건 환경에 따라가기보다 그 환경에서 자신의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적, 물리적, 사회적 요구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에 따라 같은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과정과 속도에도 차이

게 되어 실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30평 아파트에 입주하여 잘살고 있다.

가 있다.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가치와 견해를 가지고 상황에 접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고든(M. Gordon)은 적응에 대하여 동화과정 7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첫째 단계는 문화적 동화(cultural assimilation)로 문화적 규범에 적응하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구조적 동화(structural assimilation)로 새로운 사회의 경제적, 제도적 구조에 적응하는 것이다. 셋째 단계는 결혼 동화(marital assimilation)로 새로운 사회의 관습과 제도에 통합한다. 넷째 단계는 정체성동화(identificational assimilation)로 시민의 태도, 신념, 가치관과 일치한다. 여섯째 단계는 행위에 대한 동화(behavior receptional assimilation)로 기존 사회와 완전히 합치하게 되는 것이고 시민적동화(civic assimilation)는 기존사회와 갈등이 없이 가치를 공유하고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단계는 시계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박정아, 2006).

최명민 외(2015)는 “다문화사회복지론”에서 적응(adaptation)은 새로운 문화에 얼마나 익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심리적 적응은 건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인성적·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에 대한 개인적 만족을 얻는 상태를 말한다.

사회문화적 적응은 외적인 결과로서 가족이나 직장, 학교생활 등에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Berry & Sam, 1997). 윤인진(2000)은 적응을 “개인의 내적인 심리적 욕구와 외적인 사회 환경 사이에 조화를 이루고 좌절하거나 불안감이 없이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고 보고하였다.

Engllish는 적응을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의 상태로 물리적, 사회적 수요를 비롯한 욕구의 대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상대적 적응(relative adjustment)은 이러한 욕구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Ruben & Kealy는 적응을 만족으로 개념화 하고 자기만족(self-satisfaction), 만족감(contentment)으로 정의하였다(유시연, 2001).

Berry는 자신의 고유문화 정체성의 유지와 주류사회 문화수용 등 두 가지 측면에 기반하여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gregation), 주

변화(Marginalization) 등 네가지 측면으로 범주화 하였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국의 고유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류문화를 수용하는 것은 통합의 범주에 속하고, 두 가지 문화에 모두 적응하지 못하면 주변화 범주에 속한다.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새로운 주류사회에 함몰되는 것은 동화라고 하고, 주류사회 문화는 수용하지 않고 기존의 모국문화의 정체성만을 고집하는 것은 분리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정의하였다(최명민 외, 2015).

문화적응이란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면서 자신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으로, 사회적 가치와 문화양식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만길, 1996).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대하여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정의를 보면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으로, 심리적 적응은 정체성 혼란 또는 내적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건전한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Berry and Sam, 1997)이라고 보고하였다. 사회문화적 적응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는 것으로(채나리, 2012) 정의하였으며, 김창근(2011)은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 규범, 가치, 문화양식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박경숙(2014)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을 사회환경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경제적 사회적 행위들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한만길(1996)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을 심리적인 적응, 사회구조적인 적응, 문화적인 적응, 직업적응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오혜정(1995)은 사회구조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으로 경제, 사회, 직장, 학교, 언어생활을 보았으며 문화적 측면은 대인관계 및 가정과 종교생활을 보았다(오혜정, 1995). 장혜경(2000)은 사회적응을 경제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였으며 경제적 적응은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득, 기술, 직업 등을 의미하며, 심리적 적응은 남한사회구성원으로 사회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라고 보고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은 일상생활에서 좌절이나 불만이 없이 남한사회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설진배 외, 2014)것 이라고 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들

은 정착과정에서 심리적응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윤경, 2014).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은 개인차가 있으나(윤인진, 2007) 상당수는 심리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윤경 외, 2014).

장혜경 외(2000)에 의하면 이러한 심리적 문제는 의심(suspiciousness), 불안(unrest), 우울(depression), 신체적 호소(somatic complaints) 등 정신적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고 굶주림, 고문이나 폭력을 경험하거나 가족과의 이별, 체포, 검문 공개처형 등을 경험하였으며(김희경, 2012), 제3국에서 인신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발각의 두려움 등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윤경 외, 2014).

북한이탈주민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현상들은 신체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신체적으로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으로 이것은 정신과적 치료를 요구하는 증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실제 이런 증상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했다고 박○○, 서○○ 등이 증언하였다. 안○○은 북한에서 남편의 폭력과 함께 제3국에서 헤어져 지금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딸에 대한 정신적 고통으로 현재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토록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에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 한국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로 인하여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정훈(2001)은 심리적 적응을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정의 하였으며, 김명선(2015)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좌절감이나 불안감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탈출과정, 중국 등지의 제3국 체류 기간 시, 그리고 한국사회 내 적응 기간을 통하여 다양한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갈등은 그들의 특수한 신분과 경험으로 인하여, 또한 개인적 특성에 의하여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최민영 외, 2015).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과정의 어려움을 비롯한 다양한 위험상황으로

인해 심리적 적응에 상당한 불리함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주와 재 적응 과정의 문화적응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은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경제 및 사회활동을 비롯한 대인관계에서 언어와 문화적 차이, 남한사회 제도 및 법률에 대한 거리감이나 불안감이 없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경험

1. 가정폭력 개념 및 유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가정폭력이란 한마디로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에서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이다⁸⁾.

가정폭력의 대상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에 대한 폭력, 자녀에 대한 폭력, 부모에 대한 폭력 등이다. 한마디로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가족구성원이 다른 가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박혜

8) 법제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속 외, 2016).

이신옥(2003)은 학대와 폭력의 개념을 분리하여 학대는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행위이며, 폭력은 서로 힘의 균형이 같은 상태에서 상호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가정폭력범죄란 상해와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와 감금, 협박, 강간과 추행, 준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권리행사 방해, 사기와 공갈, 손괴, 촬영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⁹⁾. 박정순(2013)은 가정폭력의 유형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폭력으로 명시하였으며, 전숙이와 손철우(2018)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이 의도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보고 하였다. 폭력의 형태는 신체적 폭력으로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자유구속 등과 같이 신체에 유해를 가하는 행위이며, 정서적 폭력은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친정·시댁 비난, 심각한 욕설, 인간관계 통제, 간섭과 의심, 기물파손이나 동물학대 등의 간접적이 폭력도 해당된다. 성적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부부강간 등이다. 부부강간은 2013년 5월부터 대법원에서 부부강간죄가 성립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부부간에 폭력, 협박으로 가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부부간의 폭행·협박으로 인한 성관계는 2011년 첫 강간죄로 인정했다(경북일보, 2011). 경제적 폭력을 경제활동 통제, 경제적인 방임,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가 해당된다. 생활비를 주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따지는 것도 경제적인 폭력에 해당된다. 또한 상대방의 의견이나 결정권을 무시하고 본인의 의견이나 결정을 강요하는 행위도 폭력에 해당된다. 이주여성을 상대로 행해지는 방임, 유기, 낙태강요, 여권·외국인등록증을 빼앗고 주지 않는 등의 행위도 기타폭력에 해당한다.

가정폭력의 유형은 과거의 단순한 신체적 폭력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폭력과 같은 정서적인 폭력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을 제공하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위협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등과 같은 방임도 가정폭력에 해당된다.

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3.

가정폭력 개념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권부남(2008)은 가정폭력의 개념을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성적인 폭력으로 명시하였으며, 최정미(2015)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폭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정은주(2020)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우울과 불안 감소를 위한 마음챙김 기반 미술치료 사례연구에서 가정폭력의 개념을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동반한 행위라고 명시하였다. 김소영(2010)은 가정폭력의 개념을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가정폭력의 개념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통제, 방임 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 상의 가정폭력 개념을 의미하며 가정폭력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통제, 방임 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현황

남북하나재단(2022)에서 진행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2022년 11.4%, 2021년 11.6%가 한국사회에서 가정불화로 인해 자살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는 일반국민에 비해 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연, 파혼 등의 이유로 2022년 3.2%, 2021년 1.4%로 자살충동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실태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33.4%가 신체·심리건강에서 “나쁨”으로, 일상생활에서 59.8%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성정현과 김지혜(2021)는 ‘사회적 폭력경험과 자아존중감이 북한이탈여성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 여성들보다 약 2~3배 이상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 서울신문(2005)에 의하면 북한이탈여성이 북한출신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했다고 보도 되었다. 또한 연합뉴스(2021)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탈북여성 폭

력피해 실태조사에서 2017년 조사에서 25.2%가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남북하나재단(2020) 사회통합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2019년 44.7%, 2020년 46.9%가 가정생활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일반국민의 41.0%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60%는 무직이며, 직장을 가져도 1~2달이나 1년 이내에 이직하는 경우가 68%(조동운, 2015)로 경제활동에서 이직률이 높은 것도 가정폭력 경험의 부적응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취업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직을 반복하는 현상이 나타나(신나래, 2015)고 있으며 이러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경험은 한국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2010)의 가정폭력실태를 놓고 보아도 북한이탈주민이 부부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88.5%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선행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북한에서의 가정폭력경험이 한국사회정착과정에서 남한가정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제3절 북한가정폭력경험과 한국사회적응과의 관계

1.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과 한국사회적응과의 관계

가정폭력 목격경험은 성장과정에 부모간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것으로(박정순, 2014) 부모의 신체 및 정서적 폭력을 목격한 것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목격 경험은 첫째, 북한사회로부터의 폭력 목격경험을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특수한 사회체제의 수직적 구조에서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북한이탈주민은 가정폭력에 앞서 사회에서 부터 폭력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왔으며 이러한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환경에서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

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북한사회는 강제력에 의한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다고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양정훈, 2005) 폭력적 구조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폭력을 목격하고 경험함으로써 학습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강 ○○)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미국놈 때려 부시자”라는 구호를 부르면서 실제 방망이를 들고 마네킹 모형을 부시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장차 성인이 되었을 때 폭력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폭력이 더욱 가증될 수 있다.

둘째, 가정으로 부터의 폭력 목격 경험이다. 김정란(2014)은 가정폭력 간접경험에 노출되었을 때 우울, 불안, 위축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한 청소년들이 공격성이 증가하고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될 수 있으며(김재엽 외, 2014), 외부세계와 단절하고 능력이 미달 되는 등 가정폭력 목격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차별화 된 특성을 지닌다고(김경은, 2013) 보고하였다. 또한 부부폭력을 목격한 아동들은 신체적인 부분에서 두통, 복통, 천식, 틱장애, 수면장애, 자살소동 등과 같은 부적응을 보이고 있으며(김정란, 2003), 행동장애로서 낮은 학교성과 학교 등교를 거부하거나 폭행, 가출,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셋째, 가정폭력 목격경험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이다. 가정폭력 목격경험이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되는 이론은 대표적으로 사회학습 이론을 들 수 있다.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그 행위를 반복할 능력을 획득한다고 보는 것처럼 가정폭력 목격경험이 있는 아동들이 배우자나 아동을 학대하는 가해자로서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정영숙 외, 2003). 또한 가정폭력 목격경험이 있는 아동들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에서 영향을 받고 있으며 폭력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부적응 현상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은 과거에 북한에서 가정폭력 목격경험으로 학습되어진 상태에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한국사회정착에 대한 방향을 찾을 수 없을 때 폭력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경험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폭력이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한국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말해주고 있다.

2.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한국사회적응과의 관계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심리·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박정순, 2014),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은 학대나 방임과 관련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폭력에 매우 허용 적이고 사회의 큰 문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보다 폭력에 매우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사회에서 폭력은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폭력에 노출되어 성장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폭력행동이 학습됨으로서 세대를 넘어 폭력이 전승 되어 왔다(Gelles, 1993). 북한이탈주민들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보안원(경찰)¹⁰⁾으로부터 폭력을 당했으며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은 때와 장소, 이유를 가리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단순 폭력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사형을 당하는 모습을 강압적으로 보아야 했으며¹¹⁾ 이러한 경험은 큰 충격으로 다가와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폭력적인 사회분위기는 개인의 삶이나 인권은 존중되지 않고

10) 북한에서 ‘보안원’은 한국의 경찰이며 ‘보위지도원’은 한국의 국정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11) 북한이탈주민 (하○ 51세)은 회령시장에서 사과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강변에 나가라고 강압적으로 시장사람들을 모두 내몰아 어쩔 수 없이 회령에서 탈북을 도운 북한주민을 총살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집단의 이익에만 집중되어 온 북한사회에서 공공연한 일로 여겨지면서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이나 자존감이 사라지고 아울러 타인에 대한 배려도 미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사회의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쳐 가족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벗어나 폭력적인 행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데이트폭력에도 영향을 미치며(윤진 외, 2012), 사회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와 함께 자해나 자살행동, 우울과 불안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다(김정란, 2014).

이처럼 선행연구 분석에 기초하여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한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제4절 북한가정폭력경험과 남한가정폭력 피해경험과의 관계

가정폭력은 어느 나라에서나 발견되는 공통적인 문제(Campbell, 1991)이며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받은 폭력피해는 남한사회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한 분노와 좌절 등은 폭력의 학습효과와 결합하여 남한사회에서 대부분의 가정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정폭력은 분노와 좌절의 악순환을 불러오기도 한다(양정훈, 2005). 이들은 장기간 노출되는 북한사회의 가부장적 제도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으며 이러한 폭력 경험은 문제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해결방법을 폭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화가 보편화 되었으며(박정순, 2014) 이러한 현상들은 한국사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남한사회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볼 때 가정폭력에 노출되거나 가정폭력 목격경험이 있을 경우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폭력이 학습되어지고 폭력사용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심리적 불안과 좌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심리적 불안정성은 남한사회에서 가정폭력 위험성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김정은, 2013). 전숙이와 손철우(2018)의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 결혼 후 직접적으로 아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

캐나다의 사례를 볼 때 원주민보다 이주민들에게서 가정폭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Kessler et al, 2001)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발생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부적응 문제로부터 가정폭력이 발생 되는 요인(남보영 외, 2013)에도 있지만 북한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고 폭력에 노출되었던 경험이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가정폭력피해는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가족관계에서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영아 외, 2005).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사회의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남편의 폭력과 자녀학대를 경험 하였으며(김재엽 외, 2012) 남한에 정착한 후에도 가정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72.7%(조성희 외, 2019)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에서의 가정폭력피해경험이 한국에서의 가정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5절 남한가정폭력 피해경험과 한국사회적응과의 관계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삶을 황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장수미(2008)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음주문제와 영향요인” 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는 우울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와 동시에 알코올 이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남한사회에서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자녀에 대한 폭력과 자녀의 정신건강, 행동장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여성가족부, 2012).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경험이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가정폭력경험은 한국사회적응에 직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최연우(2022)는 북한이탈주민의 젠더차별도가 가정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우울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이 건강문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으며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가정폭력은 분노와 좌절 등과 같은 심리적 불안을 불러일으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었다(양정운, 2007).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자존감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하지 못하면서도 타인이나 다른 상황에서는 과도하게 흥분하고 화를 내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다. 또한 폭력사실을 숨기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세원(2003)은 가정폭력은 정서적 안정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우울과 절망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남영옥(2007)은 가정폭력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고 적대감과 대인관계에서 예민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경험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학대 받는 순간에 겪는 혼란, 공포, 분노,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며 학대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켜 가해자의 판단을 무조건 수용하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을 비난하게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위협적이었던 사건에 대한 악몽의 지속적인 재경험 및 일시적인 기억장애가 동반되며 일상생활에서 집중곤란, 감정회피, 짜증, 놀람, 수면장애 등의 특성을 보인다. 또한 불안 및 공포에 질려있고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 자포, 자기 하거나 매사에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인다. 늘 경계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있으며 독립성도 결여되어 있다. 가정폭력에 노출되면 자신이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자원들을 포기하고 사회적으로 독립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며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정신적으로 큰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 새로운 변화에 대해 큰 위협을 느낀다.

피해자의 독립심 결여는 자신의 자원 결핍을 자각하게 하고 폭력적인 가정을 떠날 수 없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으며 우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후유장애로 우울한 기분을 느끼거나 흥미·즐거움 등을 상실하여 수면장애, 초조, 피로 및 활력 상실, 무가치, 죄책감, 집중력 감소, 우유부단, 죽음에 과도한 생각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윤미숙, 2021).

이와 같이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한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한국사회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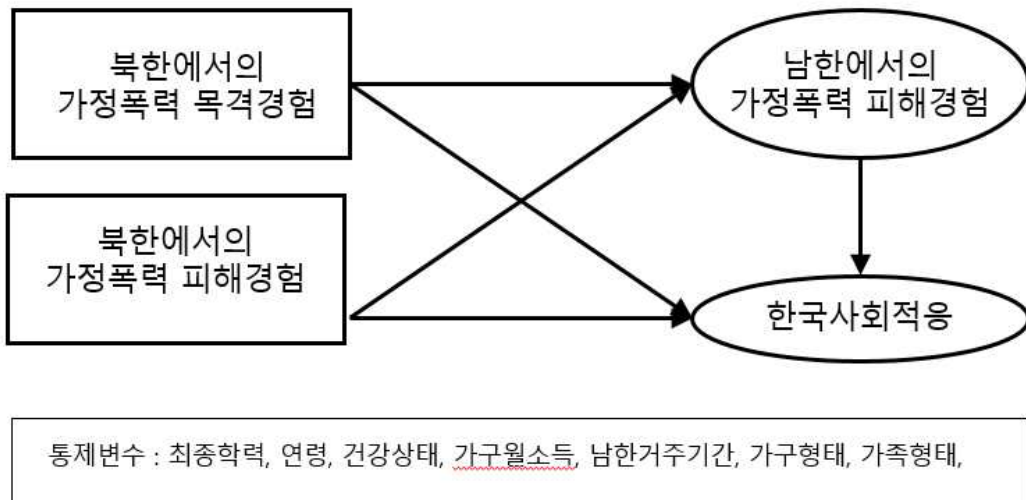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의 가정폭력피해경험이 한국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제3장 설계 및 방법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 연구모형

앞 장에서 살펴본 변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을 보면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과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한국사회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거쳐 한국사회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매개모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 모든 검증은 한국사회적응과 관련이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평균차이 검증을 통해 한국사회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주요변수들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그림 3-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위의 [그림 3-1]의 연구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은 한국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한국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은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과 한국사회적응 관계에서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가설 6.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한국사회적응 관계에서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제2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부모 간 또는 가족 간 가정폭력 목격경험과 조사대상자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에 연구대상은 남한에서 배우자 혹은 부모 형제 등과 함께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혹은 남한에서 가족과 동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으로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중 연구에 참여의사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서베이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의 명료성을 위해 본 조사에 앞서 1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문항내용의 오류 및 연구대상자의 문항 이

해수준을 고려하여 내용을 수정한 다음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모임과 단체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모임 및 단체에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다음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자리에서 응답을 한 후 직접 수거하였다. 표집방법은 유의표집이며,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2023년 1월~2월 두 달 동안 자료를 수집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389부 중 응답이 불성실 한 설문을 제외한 350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제3절 측정도구

1. 독립변수: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과 피해경험

1)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

가정폭력 간접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지현(2005)과 이화숙(2016)이 사용한 Straus(1998)의 PCCTS(The Parent-Child Conflict Scale)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사이에 발생한 폭력이 성장과정에서 목격한 간접경험을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통제 등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언어폭력 1문항, 정서적 폭력 1문항, 신체적 폭력 1문항, 경제적 폭력 2문항, 통제는 2문항으로 부모가 행한 폭력 경험을 “없음” 1점, “2~3년에 한두 번” 2점, “일 년에 한두 번” 3점, “한 달에 한두 번” 4점, “주 1회 이상” 5점의 범주로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 시에 전체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0.96으로 나타났다.

<표 3-1> 가정폭력 목격경험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요 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언어폭력	1	1	0.96
정서적 폭력	1	2	
경제적 폭력	2	3,4	
통제	2	5,6	
신체적 폭력	1	7	

2)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가정폭력 직접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1979)의 CTS(Conflict Tactic Scale)와 Straus(1998)가 Straus(1979)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작한 PCCTS(The Parent-Child Conflict Scale) 척도를 최지현(2005)과 김소영(2010)이 사용하였고 이화숙(2016)이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부모가 자녀에게 행했던” 에서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귀하가 받았던” 으로 수정하여 폭력경험을 부모뿐 아니라 부모, 형제, 자매, 부부 등 가족구성원 모두가 해당될 수 있게 하였다. 문항은 <표 3-2>에서와 같이 언어폭력 1문항, 정서적 폭력 1문항, 경제적 폭력 2문항, 통제 2문항, 신체적 폭력 1문항, 성적폭력 1문항, 방임 1문항 등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정폭력 피해경험 척도는 “없음” 1점, “2~3년에 한두 번” 2점, “일 년에 한두 번” 3점, “한 달에 한두 번” 4점, “주 1회 이상”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료 분석 시 전체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는 0.96로 나타났다.

<표 3-2> 가정폭력 피해경험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요 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언어 폭력	1	1	0.96
정서적 폭력	1	2	
경제적 폭력	2	3, 4	
통제	2	5, 6	
신체적 폭력	1	7	
성적 폭력	1	8	
방임	1	9	

2. 매개변수: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북한에서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0.92로 나타났다.

<표 3-3> 가정폭력 피해경험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요 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언어 폭력	1	1	0.92
정서적 폭력	1	2	
경제적 폭력	2	3, 4	
통제	2	5, 6	
신체적 폭력	1	7	
성적 폭력	1	8	
방임	1	9	

3. 종속변수: 한국사회적응

사회적응은 정윤경 외(2015)가 사용하고, 정은경·김희진(2014)이 사용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척도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개의 문항으로 사회활동, 대인관계, 언어차이, 문화적응, 적대감, 직장생활, 사회적 편견, 고향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 사회적 지위, 사회적 소속감, 남한사회의 제도나 법, 경제적 상황, 기회, 경제적 상황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되었으며, 부정문으로 이루어진 7번 문항부터 15번 문항까지 역산하였으며 분석에서는 이들 문항을 모두 합산하여 문항 수로 나눈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사회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0.88로 나타났다.

<표 3-4> 사회적응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

요 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사회활동	1	1	0.88
문화적응	1	2	
직장생활	1	3	
소속감	1	4	
법·제도	1	5	
기회	1	6	
대인관계	1	7	
언어차이	1	8	
적대감	1	9	
편견	1	10	
그리움	1	11	
죄책감	1	12	
사회적 지위	1	13	
경제적 상황	2	14,15	

4. 인구사회학적 변수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결혼형태, 최종학력, 종교유무, 직업형태, 가구월소득, 남한거주기간, 제3국 거주기간 변수 등이다.

성별은 남자(0)를 기준변수로, 여성(1)을 가변수화 하였으며, 연령은 응답자가 직접 기입 후 주요변수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령을 3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는 응답자가 직접 기입한 결과를 그대로 투입하였다. 질적 변수인 결혼형태는 미혼, 기혼, 이혼, 사별, 별거, 동거, 기타 등으로 측정하였으나 회귀분석 및 평균차이 분석에서는 미혼, 기혼, 기타(이혼, 사별) 등으로 세 범주화시켜 미혼(0)을 기준변수로 하여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투입시켰다. 최종학력은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재학중 포함), 대학원(재학중 포함)이며, 집단 간 평균차이 분석 시에는 초등이하(1), 중고등(2), 대학이상(3) 등으로 측정하였다. 종교유무는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종교 없음, 기타 등으로 측정하여, 종교 없음(0)과 종교 있음(1)으로 재코딩 하였다. 직업형태는 학생, 주부, 개인사업/자영업, 일일노동자, 전문직/관리직, 회사원, 무직, 기타 등 8개의 범주로 조사하였으나 평균차이 및 회귀분석에서는 무

직, 학생, 주부는 직업없음(0)으로 그 외는 직업있음(1)으로 재코딩 하여 사용하였다. 가구소득 한국거주기간은 응답자가 월수입이나 거주기간을 직접 기입하게 하여 회귀분석에서는 변수를 그대로 투입시켰으며, 집단평균을 위해서 월수입은 '고소득'(301만 원 이상), '중소득'(300만 원 이하), '저소득'(100만 원 이하)으로 재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거주기간의 평균차이 분석은 10년 이하(1), 15년 이하(2), 16년 이상(3)으로 재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가족형태는 본인혼자, 배우자같이, 자녀와 같이, 배우자와 자녀같이, 부모와 같이, 형제와 같이, 부모와 형제와 같이, 기타 등 8개의 범주로 조사하였으나 평균차이와 회귀 분석 시 동거인 여부라는 새로운 변수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거주형태는 영구 임대아파트, 월세, 전세, 자가, 전/월세, 기타 등 6개 집단으로 범주화하여 조사하였으나 평균차이와 회귀분석에서는 자가(1), 전세와 월세, 전월세를 모두 포함하여 전월세(2), 영구임대(3)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해 평균차이 분석에서 한국사회적응에 집단 간 차이를 유의미하게 보이는 변수를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정윤경 외(2015)의 연구에서 제시한 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제4절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V27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편집과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주요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정규성 확인을 위한 첨도와 왜도는 기술 통계분석 하였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및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경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함께 인구 사회적 변인에 따른 가정폭력 경험과 사회적응의 평균차이는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원배치분산분석의 사후검증은 Scheffe로 검증하였다.

넷째,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가설검증은 Baron & Kenny의 3단계 분석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설검증 채택여부는 Baron & Kenny의 분석 단계 중 2단계와 3단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를 통해 실시하였다.

여섯째, 통계량의 유의도 기준은 양측검증으로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제4장 연구결과의 분석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 350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에서는 여자가 83.4%(292명), 남자가 16.6%(58명)로 나타나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직접 기입하게 한 다음 연령대별로 다시 범주화시켜 조사한 결과, 40대가 41.4%(145명), 50대가 32.9%(115명), 30대가 15.4%(54명), 60대 이상 7.1%(25명), 20대가 3.1%(11명)로 순위로 나타났다.

결혼형태는 기혼 및 동거가 185명(52.9%)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이혼, 별거, 사별 125명(35.7%)으로 두 번째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 40명(11.4%)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배우자와 자녀같이 29.1%(10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녀와 같이 26.9%(94명), 본인 혼자 21.1%(74명), 배우자와 같이 17.1%(60명), 부모와 같이 4.0%(14명), 기타 1.8%(6명) 순으로 확인되었다.

종교에서는 종교없음이 59.1%(207명)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34.9%(123명), 천주교 2.9%(10명), 기타 2.0%(7명), 불교 1.1%(4명) 순으로 나타나 종교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거주한 기간을 직접 기입하게 하여 응답을 재범주화 시켜 제시하였다. 그 결과 11~15년이 43.4%(15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6년 이상이 24.6%(86명), 6~10년이 24.3%(85명), 5년 미만이 7.7%(27명) 순으로 나타났다. 제3국에 머문 기간을 직접기입하게 한 다음 재범주화 시켜 제시한 결과 3년 미만 20.3%(71명)로 가장 많았으며, 1년 미만 27.6%(55명), 10년 미만 12.6%(44명), 5년 미만 12.6%(69명), 10년 이상 8.9%(31명) 순으로 확인

되었다.

건강상태에서는 대체로 건강하다가 51.1%(179명)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 23.4%(82명), 대체로 건강하지 않다 16.6%(58명), 아주건강하지 않다 5.1%(18명), 아주 건강하다 3.7%(1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북한에서의 학력과 남한에서의 학력으로 구분하였다. 북한에서의 학력은 구체적으로 중고등학교 67.7%(27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초등학교 11.7%(41명), 대학이상 5.1%(18명), 기술학교(전문학교) 3.1%(11명), 무학 2.3%(8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의 학력은 해당사항이 없음이 71.4%(250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졸업 19.4%(68명), 대학원 이상 5.4%(19명), 고등학교 3.4%(12명), 중학교 3%(1명) 순위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북한탈출 이후 남한에서 교육을 상승시킨 대상자는 100명인 것을 알 수 있다.

거주형태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이 65.1%(228명)로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가 16.3%(57명), 전세 8.0%(28명), 월세 6.9%(24명), 전월세 3.4%(12명), 기타 0.3%(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절반이상이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 제공받은 영구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16.4%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자가 형태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자립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에서는 회사원이 33.1%(116명)로 가장 많았으며, 주부 20.0%(70명), 무직 12.9%(45명), 자영업 10.9%(38명), 일일노동자 10.6%(37명), 전문직 및 관리직 6.9%(24명), 학생 3.1%(11명), 기타 2.6%(9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 소득은 직접기입하게 한 결과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응답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평균 월 소득은 약 240만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을 다시 상, 중, 하로 범주화시켜 제시하면 100만 원 이하 집단은 18.3%(64명)이며, 300만 원 이하 중 집단은 61.1%(214명), 301만원이상 고집단은 20.6%(72명)로 나타났다. 가구경제형태는 해당없음이 77.1%(27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이 16.9%(59명), 차상위계층 2.9%(10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 2.3%(8명), 법정 한부모가정 0.9%(3명) 순

으로 나타났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속성	n(%)
성별	남	58(16.6)
	여	292(83.4)
연령	20대	11(3.1)
	30대	54(15.4)
	40대	145(41.4)
	50대	115(32.9)
	60대 이상	25(7.1)
결혼형태	미혼	40(11.4)
	기혼 및 동거	185(52.9)
	이혼, 사별, 별거	125(35.7)
종교	기독교	123(34.9)
	천주교	10(2.9)
	불교	4(1.1)
	종교없음	207(59.1)
	기타	7(2.0)
한국거주기간	5년 이하	27(7.7)
	10년 이하	85(24.3)
	15년 이하	152(43.3)
	16년 이상	86(24.6)
제3국생활기간	1년미만	55(27.6)
	3년미만	71(20.3)
	5년미만	43(21.6)
	10년 미만	44(12.6)
	10년 이상	31(8.9)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계속)

변수	속성	n(%)
	본인 혼자	74(21.1)
	배우자 같이	60(17.1)
	자녀와 같이	94(26.9)
	배우자와 자녀같이	102(29.1)
	부모와 같이	14(4.0)
	형제와 같이	3(0.9)
	부모와 형제 같이	3(0.9)
건강상태	아주건강하다	13(3.7)
	대체로 건강하다	179(51.1)
	보통이다	82(23.4)
	대체로 건강하지 않다	58(16.6)
	아주 건강하지 않다	18(5.1)
북한에서의 학력	무학	8(2.3)
	초등학교	41(11.7)
	중고등학교	272(77.7)
	기술학교(전문학교)	11(3.1)
	대학이상	18(5.1)
남한에서의 학력	해당사항없음	250명(71.4)
	초등학교	0(0.0)
	중학교	1(0.3)
	고등학교	12(3.4)
	대학교	68(19.4)
	대학원 이상	19(5.4)
거주형태	영구임대	228(65.1)
	월세	24(6.9)
	전세	28(8.0)
	자가	57(16.3)
	전월세	12(3.4)
	기타	1(0.3)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계속)

변수	속성	n(%)
직업	학생	11(3.1)
	주부	70(20.0)
	개인사업및자영업	38(10.9)
	일일노동자	37(10.6)
	전문직/관리직	24(6.9)
	회사원	116(33.1)
	무직	45(12.9)
	기타	9(2.6)
가구월소득	저(100만원이하)	64(18.3)
	중(300만원이하)	214(61.1)
	고(301만원이상)	72(20.6)
가구경제형태	일반 수급자	59(16.9)
	조건부수급자	8(2.3)
	차상위계층	10(2.9)
	법정 한부모가정	3(0.9)
	해당없음	270(77.1)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교차분석

인구 사회적 특성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총 350명 중 인구구성비는 남성이 58명, 여성이 292명이며 일반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1) 성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1) 성별에 따른 북한학력차이

성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최종학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최종학력을 종속변수로 성별을 독립변수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조사인원은 350명이며 그 중 남자는 58명이며 여자는 292명이다. 조사결과

북한에서의 최종학력은 ‘무학’ 이 남자 6.9%(4명), 여자 1.4%(4명)로 남성이 ‘무학’ 이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인민학교)’ 에서도 남성이 13.8%(8명), 여성이 11.3%(33명)로 남성이 조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중고등학교’ 는 남성이 74.1%(43명), 여성이 78.4%(229명)로 여성이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기술학교’ 에서도 남성은 0.0%(0명), 여성은 3.8%(11명)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대학이상’ 에서는 남성이 5.2%(3명), 여성이 5.1%(15명)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4-2> 성별에 따른 북한에서의 학력차이

학 력	남자 n(%)	여자 n(%)	총계 n(%)
무학	4(6.9)	4(1.4)	8(2.3)
초등학교(인민학교)	8(13.8)	33(11.3)	41(11.7)
중고등학교	43(74.1)	229(78.4)	272(77.7)
기술학교(전문학교)	0(0.0)	11(3.8)	11(3.1)
대학이상	3(5.2)	15(5.1)	18(5.1)
총계	58(100)	292(100.0)	350(100.0)

(2) 성별에 따른 남한학력차이

성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최종학력을 조사하기 위해 북한에서의 최종학력과 마찬가지로 남한최종학력을 종속변수로 성별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의 최종학력은 ‘해당사항없음’ 이 남자 72.4%(42명), 여자 71.2%(208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해당사항이 없음이 더 높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이 중학교는 남성이 0.0%(0명), 여성이 0.3%(1명), 최종학력이 고등학교는 남자가 10.0%(6명), 여성이 2.1%(6명)로 고등학교는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학재중은 남성 15.5%(9명), 여자 20.2%(59명)로 최종학력이 대학인 경우에도 여성이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대학원이상은 남자 1.7%(1명), 여자 6.2%(18명)로 대학원이상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최종학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3> 성별에 따른 북한에서의 학력차이

학 력	남자 n(%)	여자 n(%)	총계 n(%)
해당사항없음	42(72.4)	208(71.2)	250(71.4)
중학교	0(0.0)	1(0.3)	1(0.3)
고등학교	6(10.3)	6(2.1)	12(3.4)
대학재중	9(15.5)	59(20.2)	68(19.4)
대학원이상	1(1.7)	18(6.2)	19(5.4)
총계	58(100.0)	292(100.0)	350(100.0)

(3) 성별에 따른 건강상태

성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상태를 종속변수로 성별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결과 건강상태가 아주건강하다는 남자가 13.8%(8명), 여자 1.7%(5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아주건강하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대체로 건강하다’에서 남성이 43.1%(25명), 여성 52.7%(154명)로 여성이 남성보다 대체로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통이다’에서는 남성이 31.0%(18명), 여성이 21.9%(64명)로 남성이 보통의 수준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건강하지 않다’에서는 남성이 5.2%(3명), 여성이 18.8%(55명)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아주건강하지 않다’에서는 남성이 6.9%(4명), 여성이 4.8%(14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아주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성별에 따른 건강상태

건강상태	남자 n(%)	여자 n(%)	전체 n(%)
아주건강하다	8(13.8)	5(1.7)	13(3.7)
대체로 건강하다	25(43.1)	154(52.7)	179(51.1)
보통이다	18(31.0)	64(21.9)	82(23.4)
대체로 건강하지 않다	3(5.2)	55(18.8)	58(16.6)
아주 건강하지 않다	4(6.9)	14(4.8)	18(5.1)
전체	58(100.0)	292(100.0)	350(100.0)

(4) 성별에 따른 결혼형태

성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결혼형태 알아보기 위해 먼저 결혼 형태를 미혼, 기혼과 동거, 기타(이혼, 별거, 사별 등)로 재범주하여 결혼상태를 종속변수로 성별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결과 미혼은 남성이 22.4%(13명), 여성은 9.2%(27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미혼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과 동거에서는 남성이 37.9%(22명), 여성이 55.8%(163명)로 여성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기타(이혼, 별거, 사별 등)에서는 남성이 39.7%(23명), 여성이 34.9%(102명)로 남성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4-5> 성별에 따른 결혼형태

결혼형태	남자 n(%)	여자 n(%)	전체 n(%)
미혼	13(22.4)	27(9.2)	40(11.4)
기혼과 동거	22(37.9)	163(55.8)	185(52.9)
기타(이혼, 별거, 사별 등)	23(39.7)	102(34.9)	125(35.7)
전체	58(100.0)	292(100.0)	350(100.0)

(5) 성별에 따른 직업유무

성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 주부, 무직 항목을 ‘직업 없음’ 으로, 그 외 자영업, 일일 노동자, 전문직과 관리직, 회사원 등의 항목을 ‘직업 있음’ 으로 재분류하여 직업유무를 종속변수로 성별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결과 ‘직업 없음’ 은 남성이 19.0%(11명), 여성이 39.4%(115명)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 있음’ 에서는 남성이 81.0%(47명), 여성이 60.6%(177명)로 남성이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성별에 따른 직업유무

직업유무	남자 n(%)	여자 n(%)	전체 n(%)
직업 없음	11(19.0)	115(39.4)	126(36.0)
직업 있음	47(81.0)	177(60.6)	224(64.0)
전체	58(100.0)	292(100.0)	350(100.0)

(6) 성별에 따른 가구경제형태

성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가구경제 형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차상위 및 한부모’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해당없음’ 등 3개범주로 재범주하여 진행한 결과 ‘수급자’ 는 남성이 15.5%(9명), 여성이 19.9%(58명)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차상위 및 한부모’ 에서는 남성이 5.2%(3명), 여성이 3.4%(10명)로, ‘해당없음’ 은 남성이 79.3%(46명), 여성이 76.7%(224명)로 남성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4-7> 성별에 따른 가구경제형태

가구경제형태	남자 n(%)	여자 n(%)	전체 n(%)
수급자	9(15.5)	58(19.9)	67(19.1)
차상위 및 한부모	3(5.2)	10(3.4)	13(3.7)
해당 없음	46(79.3)	224(76.7)	270(77.1)
전체	58(100.0)	292(100.0)	350(100.0)

(7) 성별에 따른 거주형태

성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가구경제형태는 ‘자가’, ‘전월세’, ‘영구임대’ 로 재코딩하여 ‘자가’ 는 여성이 16.4%(48명), 남성이 15.5%(9명)이며,

‘전월세’에서는 남성이 32.8%(19명), 여성이 15.8%(46명)로 남성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영구임대’에서는 여성이 67.8%(198명), 남성이 51.7%(30명)로 여성이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4-8> 성별에 따른 거주형태

가구경제형태	남자 n(%)	여자 n(%)	전체 n(%)
자가	9(15.5)	48(16.4)	57(16.3)
전월세	19(32.8)	46(15.8)	65(18.6)
영구임대	30(51.7)	198(67.8)	228(65.1)
전체	58(100.0)	292(100.0)	350(100.0)

(8) 성별에 따른 소득형태

성별에 따른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은 남자가 53.4%(31명), 여자가 50.0%(146명)로 여성보다 남성이 '저소득'층이 더 많으며, '중소득'에는 남성 46.6%(27명), 여성이 48.3%(141명)로 여성이 더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에서도 남성은 0.0%(0명), 여성은 1.7%(5명)로 여성의 소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수준이 조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9> 성별에 따른 소득상태

소득수준	남자 n(%)	여자 n(%)	전체 n(%)
저소득	31(53.4)	146(50.0)	177(50.6)
중소득	27(46.6)	141(48.3)	168(48.0)
고소득	0(0.0)	5(1.7)	5(1.4)
전체	58(100.0)	292(100.0)	350(100.0)

2) 연령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1) 연령에 따른 건강상태

연령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상태를 ‘건강하지 않다’, ‘보통이다’, ‘건강하다’로 재코딩 하여 건강상태를 종속변수로, 연령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건강하지 않다’는 60대 이상이 56.0%(1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가 26.1%(30명), 40대가 16.6%(24명), 30대가 12.3%(8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에서는 40대가 29.7%(4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50대가 22.6%(26명), 60대가 4명, 30대가 13.8%(9명)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하다’에서는 30대가 73.8%(48명), 40대가 53.8%(78명), 50대가 51.3%(59명), 60대 이상이 28.0%(7명) 순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하지 않다’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에서는 30대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다음으로 60대 이상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건강하다’에서는 30대가 가장 건강하다는 응답수가 높으며, 다음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이가 적을수록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연령에 따른 건강상태

건강상태	30대 미만 n(%)	40대 n(%)	50대 n(%)	60대 이상 n(%)	전체 n(%)
건강하지 않다	8(12.3)	24(16.6)	30(26.1)	14(56.0)	76(21.7)
보통이다	9(13.8)	43(29.7)	26(22.6)	4(16.0)	82(23.4)
건강하다	48(73.8)	78(53.8)	59(51.3)	7(28.0)	192(54.9)
전체	65(100.0)	145(100.0)	115(100.0)	25(100.0)	350(100.0)

(2) 연령에 따른 소득상태

연령에 따른 소득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월수입은 '고소득'(301만 원 이상), '

'중소득'(300만 원 이하), '저소득'(100만 원 이하)으로 재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소득을 종속변수로, 연령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결과 '저소득'에는 60대 이상이 92.0%(23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대가 63.6%(7명)로 두 번째, 다음은 50대가 58.3%(67명), 30대가 46.3%(25명), 40대가 37.9%(55명)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득'에서는 40대가 60.0%(87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두 번째로 30대 51.9%(28명), 50대 40.9%(47명), 20대 36.4%(4명), 60대 8.0%(2명) 순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에서는 40대가 2.1%(3명), 30대 1.9%(1명), 50대 0.9%(1명), 20대와 60대는 0.0%(0명)로 순위로 높게 나타났다. 즉 '중소득'과 '고소득'에서는 40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 30대가 높게 나타나고, '저소득'과 '고소득'에서는 60대와 20대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대와 60대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다는 것을 보고주고 있다. 이는 20대와 60대는 연령으로 볼 때 경제활동 참여연령에서 벗어난 결과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4-11> 연령에 따른 소득상태

소득수준	20대 n(%)	30대 n(%)	40대 n(%)	50대 n(%)	60대 n(%)	전체 n(%)
저소득	7(63.6)	25(46.3)	55(37.9)	67(58.3)	23(92.0)	177(50.6)
중소득	4(36.4)	28(51.9)	87(60.0)	47(40.9)	2(8.0)	168(48.0)
고소득	0(0.0)	1(1.9)	3(2.1)	1(0.9)	0(0.0)	5(1.4)
전체	11(100.0)	54(100.0)	145(100.0)	115(100.0)	25(100.0)	350(100.0)

3) 입국 기간에 따른 소득상태

입국기간에 따른 소득 상태에서는 한국거주기간의 평균차이 분석은 10년 이하(1), 15년 이하(2), 16년 이상(3)으로 재 코딩하여 소득수준을 종속변수, 입국기간을 독립변수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층에는 입국기간이 5년인 변수가 76.2%(16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년까지 50.0%(3명)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보이고, 11년 이상이 49.2%(117명), 10년까지

48.2%(41명)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득'에서는 거주기간이 10년까지 50.6%(43명)로 가장 높고, 11년 이상이 49.6%(118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다음은 3년까지 33.3%(2명), 5년까지 23.8%(5명) 순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은 3년까지 16.7%(1명), 10년까지 12.2%(1명), 11년 이상 1.3%(3명), 5년까지 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입국기간이 길수록 '저소득'과 '중소득'에서는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고소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12> 입국 기간에 따른 소득상태

소득수준	3년까지 n(%)	5년까지 n(%)	10년까지 n(%)	11년이상 n(%)	총계 n(%)
저소득	3(50.0)	16(76.2)	41(48.2)	117(49.2)	177(50.6)
중소득	2(33.3)	5(23.8)	43(50.6)	118(49.6)	168(48.0)
고소득	1(16.7)	0(0.0)	1(12.2)	3(1.3)	5(1.4)
전체	11(100.0)	54(100.0)	145(100.0)	115(100.0)	350(100.0)

제2절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변수의 정규 성을 확인하게 위한 왜도와 첨도는 기술통계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우선 평균을 보면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은 1.69(±.84),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의 평균은 1.81(±.90),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2.11(±.99)로 나타나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북한에서의 경험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사회적응의 평균은 2.87(±.5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자의 한국사회적응 수준은 보통보다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에서의 가정폭력이 다소 심각한 수준이며, 한국사회적응 수준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요변수의 정규 성을 확인하기 위한 왜도와 첨도 값을 보면 주요변

수 모두 왜도는 0.36~1.31 범위에 있으며, 첨도는 절대 값을 기준으로 0.61에서 -1.90 범위에 있어 정규성의 일반적인 범위인 3~7을 만족하여 주요변수의 정규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를 보면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은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유의한 정의 상관을 가지며($r=0.34, p<.001$), 한국사회적응과는 유의한 부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0.37, p<.001$). 이는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이 많을수록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한국사회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과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은 유의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유의한 정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r=0.22, p<.001$)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높을수록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도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한국사회적응과도 유의한 부의 상관을 보여($r=-0.25, p<.001$),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높을수록 한국사회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한국사회적응과 유의한 부의 상관을 가지며($r=-0.45, p<.001$), 상관의 크기 또한 다소 높게 나타나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한국사회적응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북한 및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경험 변수 모두 한국사회적응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 북한 및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경험과 한국사회적응 간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북한가폭목격경험	북한가폭피해경험	남한가폭피해경험	한국사회적응
북한가폭목격경험	1			
북한가폭피해경험	0.34***	1		
남한가폭피해경험	0.04	0.22***	1	
한국사회적응	-0.37***	-0.25***	-0.45***	1
M(SD)표준편차	1.69(.84)	1.81(.90)	2.11(.99)	2.87(.55)
왜도	1.31	1.09	0.36	0.46
첨도	0.93	0.61	-1.09	0.77

*** $p < .001$

제3절 가정폭력 경험 및 한국사회적응 특성

1.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경험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과 피해경험 그리고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변수의 응답범주 중 ‘전혀 없음’을 0으로, 그 외 응답범주는 1로 재 코딩하여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경험 여부를 기술통계한 결과는 아래 표 4-3과 같다.

표를 보면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 350명 중 44.9%(157명)이며,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5.1%(193명)로 나타나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9%(220명)이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7.1%(130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북한에서 직접적인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보면,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0%(252명)이며,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8.0%(98명)로 나타나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4> 조사대상자의 가정폭력 경험

변수	속성	응답수(n)	백분율(%)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	없다	193	55.1
	있다	157	44.9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없다	130	37.1
	있다	220	62.9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없다	98	28.0
	있다	252	72.0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경험 및 한국 사회적응의 평균차이

1) 성별에 따른 가정폭력경험과 한국사회적응 평균차이

성별에 따른 본 연구의 주요변수의 평균차이를 독립표본 t검증한 결과,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에 대한 남자 집단의 평균은 1.84(±.86)이며, 여자집단은 1.54(±.83)로 남자집단의 평균이 여자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2.44, p<.05$). 다음으로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서는 여자집단의 평균(1.80, ±.92)이 남자집단의 평균(1.78, ±.79)보다 높긴 하였으나 통계적인 의미를 가지는 차이는 아니었다.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서는 여자의 평균(2.15, ±1.01)이 남자집단 평균(1.90, ±.83)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00, p<.05$). 한국사회적응에서는 여자집단의 평균(2.87, ±.53)이 남자집단 평균(2.86, ±.65)보다 높긴 하였으나 통계적 의미를 가지는 차이는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은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여자집단이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한국사회적응 수준은 남녀 집단 모두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4-15> 성별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변수	집단구분	응답자(n)	평균(표준편차)	t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	남	58	1.84(.86)	2.44*
	여	292	1.54(.83)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남	58	1.78(.79)	-0.20
	여	292	1.80(.92)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남	58	1.90(.83)	-2.00*
	여	292	2.15(1.01)	
한국사회적응	남	58	2.86(.65)	-0.05
	여	292	2.87(.53)	

* $p < .05$

2) 최종학력에 따른 가정폭력경험과 한국사회적응 평균차이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무학', 초등졸, 중졸을 포함하여 '저학력' 집단으로, 고등학교졸, 대학교, 대학원이상을 포함하여 '고학력' 으로 재범주화 하여 주요변수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가정폭력 경험에서는 학력에 의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한국사회적응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고학력 집단이 저학력 집단에 비해 한국사회 적응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t = -2.32, p < .05$).

<표 4-16> 학력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변수	집단구분	응답자(n)	평균(표준편차)	t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	저학력	236	1.57(.78)	-0.50
	고학력	114	1.63(.96)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저학력	236	1.77(.90)	-0.81
	고학력	144	1.86(.91)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저학력	236	2.12(1.00)	0.34
	고학력	114	2.08(.96)	
한국사회적응	저학력	236	2.82(.54)	-2.32*
	고학력	144	2.90(.57)	

* $p < .05$

3) 종교유무에 따른 가정폭력경험과 한국사회적응

종교에 대한 응답 항목 중 무교는 ‘종교없음’ 으로, 그 외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등은 ‘종교있음’ 으로 재 코딩하여 집단 간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주요변수 중 종교유무에 따른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종교유무 집단 간 주요변수의 평균은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4-17> 종교유무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변수	집단구분	응답자(n)	평균(표준편차)	t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	없음	207	1.59(.78)	0.02
	있음	143	1.59(.93)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없음	207	1.78(.88)	-0.45
	있음	143	1.83(.93)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없음	207	2.10(.97)	-0.01
	있음	143	2.11(1.02)	
한국사회적응	없음	207	2.85(.55)	-0.66
	있음	143	2.89(.55)	

4) 동거인 유무에 따른 가정폭력경험과 한국사회적응

동거인 유무는 동거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응답 중 본인 혼자라는 응답은 동거가족 ‘없음’ 으로, 그 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기타 항목에 응답한 경우 동거가족 ‘있음’ 으로 재코딩하여 주요변수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71, p<.01$). 즉 동거가족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그 외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과 피해경험 그리고 한국사회적응에서는 동거가족 여부와 관련 없이 모두 평균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18> 동거인 유무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변수	집단구분	응답자(n)	평균(표준편차)	t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	없음	74	1.58(.75)	-0.09
	있음	276	1.59(.86)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없음	74	1.90(.91)	1.07
	있음	276	1.77(.90)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없음	74	1.81(1.07)	-2.71**
	있음	276	2.18(.95)	
한국사회적응	없음	74	2.77(.47)	-1.60
	있음	276	2.89(.57)	

** $p < .01$

5) 직업유무에 따른 가정폭력경험과 한국사회적응

직업유무는 학생, 주부, 무직 항목을 ‘직업 없음’ 으로, 그 외 자영업, 일일 노동자, 전문직과 관리직, 회사원 등의 항목을 ‘직업 있음’ 으로 재분류하여 주요변수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는 직업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에 비해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목격경험,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더 높았으며, 한국사회적응 수준은 더 낮은 특성을 보였다. 특히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t=2.83$, $p<.01$)과 한국사회적응($t=-4.67$, $p<.001$)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보였다. 즉 현재 직업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의 평균이 직업이 없는 집단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으며, 한국사회적응 수준은 유의미하게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9> 직업유무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변수	집단구분	응답자(n)	평균(표준편차)	t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	없음	126	1.77(.93)	2.83**
	있음	224	1.49(.77)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없음	126	1.87(.96)	1.10
	있음	224	1.76(.86)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없음	126	2.21(.98)	1.48
	있음	224	2.05(.99)	
한국사회적응	없음	126	2.68(.51)	-4.67***
	있음	224	2.97(.55)	

*** $p < .001$, ** $p < .01$

6) 결혼형태에 따른 가정폭력경험과 한국사회적응

결혼형태에서는 미혼 집단과 기혼 및 동거 집단, 그리고 이혼과 사별, 별거 등을 포함하는 기타 집단으로 재범주화 하여 집단 간 주요변수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경험은 집단 간 차이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F=44.45$, $p < .001$)과 한국사회적응($F=19.03$, $p < .001$)에서는 집단 간 통계적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기혼 및 동거 집단이 미혼집단보다, 그리고 기타 집단이 미혼과 기혼 및 동거집단에 비해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타 집단의 경우 이혼, 별거, 사별 등이 포함되면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별거가 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한다. 한편, 한국사회적응에서는 미혼 집단의 평균이 기타 집단에 비해 그리고 기혼 및 동거 집단이 기타 집단에 비해 한국사회적응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표 4-20> 결혼형태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변수	집단구분	응답자(n)	평균(표준편차)	F(Scheffe)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	미혼	40	1.78(.77)	1.93
	기혼과 동거	185	1.52(.85)	
	기타 ¹²⁾	125	1.64(.84)	
	총계	350	1.59(.84)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미혼	40	1.82(.69)	0.012
	기혼 및 동거	185	1.80(.90)	
	기타	125	1.79(.96)	
	총계	350	1.80(.90)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미혼 ^a	40	1.42(.61)	44.45***
	기혼 및 동거 ^b	185	1.87(.85)	
	기타 ^c	125	2.68(1.00)	
	총계	350	2.10(.99)	
한국사회적응	미혼 ^a	40	2.89(.50)	19.03***
	기혼 및 동거 ^b	185	3.01(.58)	
	기타 ^c	125	2.64(.44)	
	총계	350	2.86(.55)	

*** $p < .001$

7) 연령에 따른 가정폭력경험과 한국사회적응

연령은 직접 기입하게 한 결과를 30대 이하와 40대, 50대 이상으로 재 코딩하여 주요변수의 평균차이를 일원배치 분산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모든 집단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그 외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F=4.93$, $p<.01$)과 피해경험($F=3.47$, $p<.05$), 그리고 한국사회적응($F=3.35$, $p<.05$)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은 ‘30대 이하’ 집단이 ‘50대 이상’ 집단보다 목격경험이 유의미하게 높으며,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30대 이하’ 집단이 ‘40대’ 집단보다 피해경험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연령이 어린 집단의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경험이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12) 기타는 이혼, 별거, 사별 등을 포함

<표 4-21> 연령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변수	집단구분	응답자(n)	평균(표준편차)	F(Scheffe)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	30대이하 ^a	65	1.83(.99)	4.93** a>c
	40대 ^b	145	1.63(.87)	
	50대이상 ^c	140	1.45(.71)	
	총계	350	1.59(.84)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30대이하	65	1.92(.85)	3.47* a>b
	40대	145	1.65(.74)	
	50대이상	140	1.90(1.04)	
	총계	350	1.80(.90)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30대이하	65	2.09(.88)	0.043
	40대	145	2.12(1.02)	
	50대이상	140	2.09(1.00)	
	총계	350	2.10(.99)	
한국사회적응	30대이하	65	2.75(.52)	3.35* b>a
	40대	145	2.95(.58)	
	50대이상	140	2.83(.53)	
	총계	350	2.86(.55)	

** $p < .01$, * $p < .05$

8)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가정폭력경험과 한국사회적응

남한거주기간은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게 한 것을 4개의 집단으로 다시 분류하여 주요변수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북한 및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경험은 집단 간 통계적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한국사회적응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53$, $p<.05$). 사후검증 결과 ‘16년 이상’ 집단이 ‘5년 이하’ 집단에 비해 한국사회적응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서 남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사회 적응수준이 높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2>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변수	집단구분	응답자(n)	평균(표준편차)	F(Scheffe)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	5년 이하	27	1.42(.68)	0.40
	10년 이하	85	1.60(.78)	
	15년 이하	152	1.61(.83)	
	16년 이상	86	1.62(.96)	
	총계	350	1.59(.84)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5년 이하	27	1.80(.90)	0.54
	10년 이하	85	1.83(.88)	
	15년 이하	152	1.85(.91)	
	16년 이상	86	1.70(.91)	
	총계	350	1.80(.90)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5년 이하	27	2.35(.98)	0.62
	10년 이하	85	2.09(.98)	
	15년 이하	152	2.10(.97)	
	16년 이상	86	2.06(1.03)	
	총계	350	2.10(.99)	
한국사회적응	5년 이하 ^a	27	2.64(.42)	3.53*
	10년 이하 ^b	85	2.85(.50)	
	15년 이하 ^c	152	2.83(.48)	
	16년 이상 ^d	86	3.01(.71)	
	총계	350	2.86(.55)	

* $p < .05$

9) 건강상태에 따른 가정폭력경험과 한국사회적응

건강상태는 ‘아주 건강하다’ 와 ‘건강한 편이다’ 를 ‘건강하다’ 집단으로,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와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를 ‘건강하지 않다’ 집단으로, ‘보통이다’ 를 ‘보통’ 집단으로 재 범주화하여 주요변수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경험에서는 집단 간 평균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한국사회적응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상태는 현재 기준인 반면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경험은 과거의 경험인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건강하지 않다’ 집단의 평균이 ‘보통’ 집단보다, ‘건강하다’ 집단이 ‘보통’ 집단보다 평균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으며(F=6.92,

p<.01), 한국사회적응에서는 ‘보통’ 집단과 ‘건강하다’ 집단이 ‘건강하지 않다’ 집단에 비해 한국사회 적응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나(F=11.49, p<.001), 건강한 수준이 더 높을수록 한국사회 적응수준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표 4-23> 건강상태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변수	집단구분	응답자(n)	평균(표준편차)	F(Scheffe)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	건강하지 않다	76	1.64(.88)	0.20
	보통	82	1.55(.81)	
	건강하다	192	1.59(.84)	
	총계	350	1.59(.84)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건강하지 않다	76	1.82(.99)	1.31
	보통	82	1.66(.73)	
	건강하다	192	1.85(.93)	
	총계	350	1.80(.90)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건강하지 않다 ^a	76	2.35(1.02)	6.92**
	보통 ^b	82	1.79(.87)	
	건강하다 ^c	192	2.14(.99)	
	총계	350	2.10(.99)	
한국사회적응	건강하지 않다 ^a	76	2.63(.47)	11.49***
	보통 ^b	82	3.04(.57)	
	건강하다 ^c	192	2.88(.54)	
	총계	350	2.86(.55)	

***p<.001, **p<.01

10) 주거형태에 따른 가정폭력경험과 한국사회적응

주거형태는 ‘자가’, ‘전월세’, ‘영구임대’ 로 재 코딩하여 주요변수의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과 피해경험, 남한에서의 피해경험이 낮은 특징을 보였으며, 한국사회적응 수준은 높은 특성을 보였다. 특히 한국사회적응에서는 ‘자가’ 집단이 ‘영구임대’ 집단보다 한국사회적응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F=9.12, p<.001).



<표 4-24> 주거형태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변수	집단구분	응답자(n)	평균(표준편차)	F(Scheffe)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	자가	57	1.49(.85)	0.84
	전월세	65	1.69(1.00)	
	영구임대	228	1.59(.79)	
	총계	350	1.59(.84)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자가	57	1.65(.84)	2.02
	전월세	65	1.69(.82)	
	영구임대	228	1.87(.93)	
	총계	350	1.80(.90)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자가	57	2.00(1.04)	0.96
	전월세	65	2.00(.90)	
	영구임대	228	2.16(1.00)	
	총계	350	2.10(.99)	
한국사회적응	자가 ^a	57	3.13(.63)	9.12*** a>c
	전월세 ^b	65	2.91(.52)	
	영구임대 ^c	228	2.79(.52)	
	총계	350	2.86(.55)	

*** $p < .001$

11) 가구 월소득에 따른 가정폭력경험과 한국사회적응

가구 월소득은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여 한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301만 원 이상’ 으로 집단으로 구분하여 주요변수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소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경험,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더 높은 특성을 보였으며, 한국사회적응 수준은 더 높은 특성을 보였다. 특히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서는 ‘100만 원 이하’ 집단이 ‘301만 원 이상’ 집단에 비해 피해경험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으며 ($F=3.422, p<.05$), ‘300만 원 이하’ 집단이 ‘100만 원 이하’ 집단에 비해, 그리고 ‘301만 원 이상’ 집단이 ‘100만 원 이하’ 집단과 ‘300만 원 이하’ 집단에 비해 한국사회적응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16.040, p<.001$).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월가구 소득에 따라 남한에서의 가정폭력과 한국사회적응 수준은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5> 가구 월소득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변수	집단구분	응답자(n)	평균(표준편차)	F(Scheffe)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	100만원 이하(하)	64	1.79(84)	2.74
	300만원 이하(중)	214	1.58(88)	
	301만원 이상(상)	72	1.45(69)	
	총계	350	1.59(84)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100만원 이하(하)	64	1.90(94)	2.15
	300만원 이하(중)	214	1.84(94)	
	301만원 이상(상)	72	1.61(70)	
	총계	350	1.80(94)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100만원 이하(하) ^a	64	2.28(110)	3.42*
	300만원 이하(중) ^b	214	2.13(99)	
	301만원 이상(상) ^c	72	1.86(84)	
	총계	350	2.10(99)	
한국사회적응	100만원 이하(하) ^a	64	2.62(48)	16.00***
	300만원 이하(중) ^b	214	2.85(51)	
	301만원 이상(상) ^c	72	3.14(63)	
	총계	350	2.88(55)	

*** $p < .001$, * $p < .05$

이상의 인구 사회적 변인에 따른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결과를 통해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한국사회적응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최종 학력, 직업유무, 결혼형태, 연령, 남한거주기간, 건강상태, 주거형태, 가구 월 소득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검증을 위한 통제변수로서 이들 변수를 통제하여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과 피해경험,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제5절 가설검증

이 연구의 가설검증은 Baron과 Kenny의 3단계 접근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Baron과 Kenny의 3단계 접근법에 의한 매개효과 검증은 우선, 1단계는 한국사회적응을 종속변수로 하여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과 피해경험을 독립변수로 두었을 때 회귀계수가 유의하여야 한다. 2단계는 매개변수인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종속변수로 두고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과 피해경험을 독립변수로 두었을 때 회귀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야 한다. 3단계는 한국사회적응을 종속변수로 하고 매개변수와 독립변수를 모두 독립변수로 두었을 때 회귀계수가 유의미해야 한다.

1) 1단계: 북한에서의 가정폭력경험이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한국사회적응 평균차이 검증에서 통계적 의미를 보인 최종학력, 직업유무, 결혼형태, 연령, 남한거주기간, 건강상태, 주거형태, 가구월 소득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경험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F=13.76$, $p<.001$), 투입된 변수들의 한국사회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30.9%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구 사회적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경험은 한국사회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Baron과 Kenny의 접근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1단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표 4-26>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경험이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t	유의수준
	계수	표준오차	계수(β)		
(상수)	3.06	0.21		14.46***	0.000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경험	-0.19	0.03	-0.29	-5.80***	0.000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082	0.03	-0.13	-2.73**	0.007
최종학력	0.05	0.02	0.10	2.22*	0.027
연령	0.00	0.00	0.07	1.35	0.178
통제변수					
결혼형태(미혼=0)					
기혼 및 동거	-0.03	0.09	-0.02	-0.29	0.775
기타(이혼, 별거, 사별)	-0.30	0.09	-0.26	-3.32**	0.001
남한거주기간	0.01	0.01	0.09	1.77	0.078
건강상태	0.06	0.03	0.10	1.96	0.051
거주형태(자가=0)					
전월세	-0.05	0.09	-0.03	-0.50	0.617
영구임대	-0.15	0.08	-0.13	-1.97*	0.049
가구월소득	4.55E-8	0.00	0.10	1.86	0.064
F(모형접합도)=13.76***					
R ² (사회적응)=0.31, adj.R ² =0.29					

a. 종속변수: 한국사회적응

2) 2단계: 북한에서의 가정폭력경험이 남한에서의 가정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매개모형 검증을 위한 Baron과 Kenny의 2단계는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경험과 피해경험을 독립변수로 두고 매개변수로 선정된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종속변수로 두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인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를 위해 통제변수 없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인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의 적합 도는 $F=11.35(p<0.001)$ 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된 변수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변량은 6.10%로 확인되었다.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은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은 $b=0.15$ 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28, p<0.05$).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또한 남

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은 $b=.29$ 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4.71, p<.001$). 이는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이 1단위 증가할 때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0.15(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1단위 증가할 때마다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0.29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Baron과 Kenny의 2단계의 요건을 충족시킨 결과이다. 따라서 연구가설 3(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은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과 연구가설 4(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수용되었다.

<표 4-27> 북한 가정폭력 경험이 남한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t	유의수준
	계수	표준오차	계수(β)		
(상수)	2.4	0.13		17.94***	0.000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경험	0.15	0.07	0.13	2.28*	0.023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0.29	0.06	0.26	4.71***	0.000
F(모형적합도)=11.350***					
R ² (사회적응)=0.06, adj.R ² =0.06					

a. 종속변수: 한국사회적응

3) 3단계: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경험과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Baron과 Kenny의 3단계 요건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모두 투입한 상태에서 종속변수인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해야 한다. 이를 위해 3단계는 한국사회적응에 대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매개변수를 모두 투입한 모형이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모형이 적합하였으며($F=24.26, p<0.00$), 투입된 변수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46.3%로 확인되었다. 투입된 변수 중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b=-.16, p<0.00$)과 피해경험($b=-0.16, p<0.00$), 그리고 남한에서의 가정폭

력 피해경험($b=-0.27, p<0.00$) 모두 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aron과 Kenny의 3단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이 적을수록 한국사회적응이 유의미하게 높으며,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적을수록 남한에서의 사회적응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연구가설 1과 2가 수용되었다.

한편, 모든 변수를 투입한 상황에서 통제변수 중 한국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최종학력($b=0.06, p<0.00$), 남한거주기간($b=0.01, p<0.05$), 건강상태($b=.05, p<.05$), 주거형태 중 ‘자가’가 ‘영구임대’에 비해 한국사회적응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0.14, p<0.05$). 즉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남한거주기간이 길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주거형태가 ‘자가’ 집단이 ‘영구임대’ 집단보다 한국사회 적응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8> 북한폭력경험과 남한폭력경험이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 계수		표준	t	유의수준	
	계수	표준오차	계수(β)			
(상수)	3.80	0.20		18.87***	0.000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경험	-0.16	0.03	-0.25	-5.62***	0.000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0.16	0.03	-0.26	-5.71***	0.000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0.27	0.03	-0.47	-9.84***	0.000	
최종학력	0.06	0.02	0.11	2.66**	0.000	
연령	-0.00	0.00	-0.03	-0.64	0.520	
통제변수	결혼형태(미혼=0)					
	기혼 및 동거	0.16	0.08	0.15	1.96	0.051
	기타(이혼, 별거, 사별)	0.08	0.09	0.07	0.93	0.352
	남한거주기간	0.01	0.01	0.08	1.97*	0.049
	건강상태	0.05	0.03	0.09	2.07*	0.039
	거주형태(자가=0)					
	전월세	-0.10	0.08	-0.07	-1.28	0.200
	영구임대	-0.14	0.07	-0.12	-2.03	0.043
	가구월소득	2.17E-8	0.00	0.05	0.99	0.320
F(모형적합도)=24.26***						
R ² (사회적응)=0.46, adj.R ² =0.44						

a. 종속변수: 한국사회적응

4)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이상의 결과로 Baron과 Kenny의 3단계 조건은 모두 충족되었으나 이러한 간접효과 크기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 공식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a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대한 회귀계수이며, b는 매개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계수이다.

$$Z_{ab} = \frac{a \times b}{\sqrt{(a^2 \times se_b^2) + (b^2 \times se_a^2)}}$$

a=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이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회귀계수

b=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회귀계수

se=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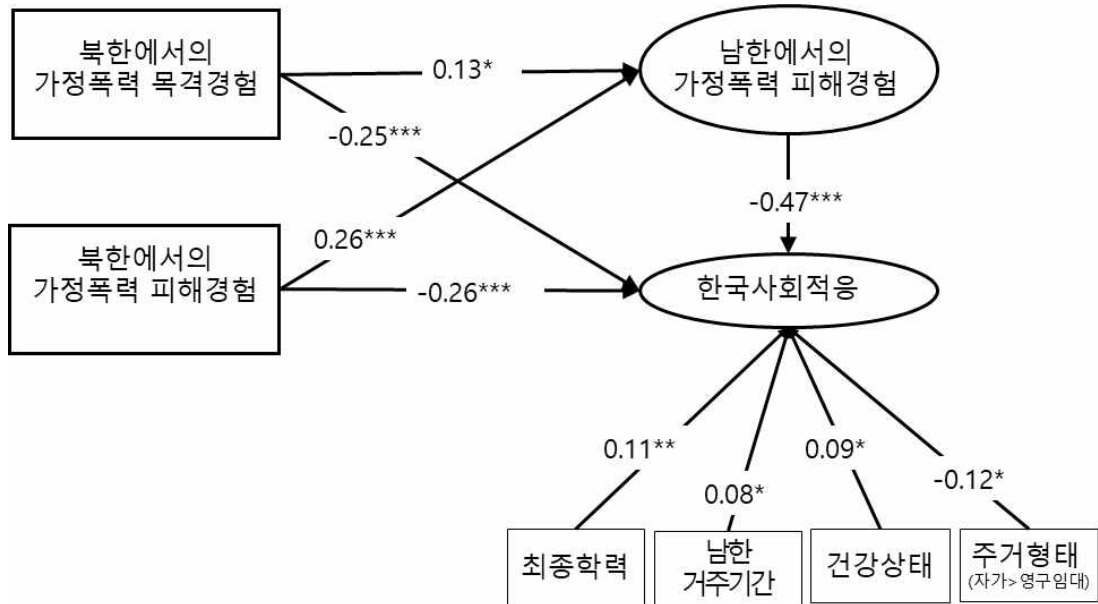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이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통해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는 -0.04이고 통계량 Z값은 -2.218이며, 이때의 유의확률은 0.03로 나타나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거쳐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는 -.08이며, 통계량 Z값은 =-4.22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때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나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사회적응 간에 매개효과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 및 피해경험과 사회적응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연구가설 5(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과 사회적응 관계에서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와 연구가설 6(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사회적응 관계에서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은 수용되었다.

<표 4-29> 간접효과 크기 및 유의성 검증

경로	간접효과 크기	Z (표준값)	유의 수준
(북한)가정폭력목격경험→(남한)가정폭력 피해경험→한국사회적응	-0.04	-2.22*	0.03
(북한)가정폭력피해경험→(남한)가정폭력 피해경험→한국사회적응	-0.08	-4.22***	0.00

가설검증을 통해 도출된 각 경로의 회귀계수에 대한 그림은 아래와 같다.



그림의 숫자는 표준화회귀계수(β)임

통제변수는 한국사회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만 제시함

[그림 2] 연구모형의 회귀계수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분석결과의 고찰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을 높이기 위한 개입지점으로 가정폭력경험에 주목하여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 경험과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한국사회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 경험이 한국사회적응과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함께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의 간접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23년 1~2월에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350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를 활용하여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3단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의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r test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경험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변수(최종학력, 연령, 결혼형태, 남한거주기간, 건강상태, 거주형태, 가구월소득)를 통제하여도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경험은 한국사회적응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에서 가족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목격했거나 가정폭력을 경험했을 때 한국사회적응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경험이 높을수록 한국사회적응 정도가 낮고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경험이 낮을수록 한국사회적응 수준이 높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박정순: 2014, 박인선: 2002, 박진아 외: 2018, 윤진 외: 2012, Gelkes: 1993, 김정란: 2014, 양정훈:2005).

둘째,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 경험은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

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이 높을수록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높으며,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높을수록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정훈:2005, 박정순:2014, 김경은:2014, 김재엽 외:2019, 조영아 외: 2005).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경험과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경험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어려우나 이와 유사한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아동의 비행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민경(2009)의 연구와 손연우와 권호인(2018)의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볼 때, 가정폭력은 공간과 시간에 관계없이 학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박상미 외: 2021, 배영미:2014, 전숙이 외: 2018).

셋째,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높을수록 한국사회적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사연구인 가정폭력경험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김경숙:2016, 신민석 외:2004, 조성희 외:2019, 이명순:2016, 박혜숙 외: 2016, 정은주:2020).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인 자살충동 및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Kessler et al: 2001, 김경은:2013, 성정현 외:2021, 김정란 외:2014). 특히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을 보면,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은 $b = -0.25$ ($p < 0.001$)이고,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의 회귀계수는 $b = -0.26$ ($p < 0.001$),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의 영향력은 $b = -0.47$ ($p < 0.001$)로 나타나 한국사회적응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변수는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며, 다음으로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간적으로 현재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특성이기도 하고 현재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정도가 심각한 이유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남한에서 생활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을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경험과 사회적응을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은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높이고 이는 다시 한국사회적응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높이고 이는 다시 한국사회적응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 목격 및 피해 경험은 또 다른 폭력을 통해 강화되면서 적응을 낮추는 기제로 작동함을 유추하게 한다. 특히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에 비해 피해경험이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거쳐 한국사회적응 수준을 더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에 비해 본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적응에는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다.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로는 문제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 폭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며, 북한에서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와서도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박정순(2014)은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가정폭력경험이 있는 경우 폭력사용에 수용적인 태도로 남한사회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며, 남한에 정착한 후 가정폭력에 노출될 비율이 높다는 김경은(2013), 조성희 외(201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남한에서의 가정폭력경험이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을 높이기 위해서 남한에서의 가정폭력피해경험에 대한 다양한 개입방법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가설의 논의 외에도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한국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최종학력, 남한거주기간, 건강상태, 주거형태 등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에서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사회적응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남한거주기간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주거형태가 자가인 집단이 영구임대 집단에 비해 한국사회적응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학력에 따라 한국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사회적응 수준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한국사회적응 수준이 낮

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서주연:2006, 노인숙 외:2009, 김명선:2015, 강창구:2016, 김경숙:2016).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최종학력이 한국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한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로서(박정아:2007, 박정숙:2014, 편송경:2009, 이인희:2015, 김의남: 2014, 장경영:2008).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김의남(2014)은 북한학력이 한국사회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북한에서의 최종학력은 한국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한국에서의 최종학력은 한국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남한거주기간에 따른 사회적응이다.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사회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한국사회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사회적응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김명선:2015, 편송경:2009, 강효림:2008, 이소래:1997, 서주연:2006, 박윤숙:2006). 최종학력과 마찬가지로 한국거주기간이 한국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박정아:2007, 유시연:2001, 이인희:2015, 김의남:2014, 장경영:2008). 우주온(2004)은 결혼이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사회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사회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거주기간이 길다고 해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차별과 편견을 받고 있는데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추정된다. 본 연구자의 석사논문에서 한국거주기간이 11년 이상 된 집단이 우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선행연구 분석에 기초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셋째, 건강상태에 따른 한국사회적응이다. 건강하다고 응답한 집단이 한국사회적응 수준이 높고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이 한국사회적응수준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건강상태에 따라 한국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박정아:2007, 편송경:2009, 이소래:1997, 서주연:2006). 그러나 장경영(2008)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가 한국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상반된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넷째, 주거형태에 따른 한국사회적응이다.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주거형태에 따라서 ‘자가’ 거주 집단이 ‘영구임대’ 거주 집단에 비해 한국사회적응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김명선(2015), 이소래(1997), 서주연(2006), 손문경(2002) 등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재북 당시에 한국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사회와 화려한 주거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처음 영구임대 아파트에 주거지를 배정받을 때 많은 실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여 새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하는 사례들이 있으며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한국사회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경험 평균차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경험에 대한 평균비교 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를 보면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이 여성보다 남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평균차이는 가정폭력 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에 따른 평균 차이는 종교 유무 집단 간 주요변수의 평균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인 유무에서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과 피해경험은 동거가족 여부와 관련 없이 모두 평균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업유무에서는 직업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목격경험의 평균이 직업이 있는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형태에서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경험은 집단 간 차이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의한 평균차이는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에서는 30대 이하가 가장 높고, 다음은 40대, 50대 이상 순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30대가 가장 높고 다음은 50이상,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폭력 목격경험과 피해경험 모두에서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1990년대에 들어서 북한의 식량사정의 어려움과 동시에 사회적 혼란에 따라 연관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은 남성이, 피해경험은 여성이 더 높고, 직

업유무에서는 직업이 없는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30대가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학력, 종교유무, 직업유무, 거주기간, 거주형태, 가족형태 등에 따르는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경험에 대해 비교분석 한 선행연구는 아쉽게도 없었다.

둘째,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결과이다. 우선, 성별에 따른 평균차이를 보면 여자의 평균이 남자집단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종교유무에서도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동거가족 유무에서는 동거가족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남한에서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유무에서도 직업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에 비해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형태에 따른 평균차이는 기혼 및 동거 집단이 미혼집단보다, 그리고 기타 집단이 미혼과 기혼 및 동거집단에 비해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기타집단이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별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평균차이는 모든 집단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남한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하지 않다' 집단이 '보통' 집단보다, '건강하다' 집단이 '보통' 집단보다 평균이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즉 건강하지 않는 집단이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경험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거형태에 따른 평균차이는 자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가구 월소득에서는 '저소득' 집단이 '고소득'집단에 비해 피해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남한에서 가정폭력 피해경험도 마찬가지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비교분석 데이터는 찾을 수 없었다. 앞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교분석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제2절 제언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개입전략과 지지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정책적 측면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는 가족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의 법제도를 잘 모르고 있으며 특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북한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다가 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여성은 매를 맞아도 ‘맞을 짓을 해서 맞았겠지’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해도 스스럼없이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며 북한의 법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에 노출되더라도 특별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 제6장 제46조 ‘가정폭행의 금지’ 법에는 “가정에서는 여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폭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정폭행을 막기 위한 주민들과 종업원 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 관할지역 또는 자기 소속 공민들의 가정에서 가정폭행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이런 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교육을 하나 받으려고 해도 수도권에 모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교육을 받기 위해 수도권을 오르내리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접근성의 문제로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프로그램, 취업, 사회복지제도 등 다양한 사업들이 모두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처음 ‘하나원’을 나와 지방에 주거지를 받았다가도 다시 수도권으로 재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수도권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일반주민에 비해 지역 불평등으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 당사자가 되며 이러한 불평등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이런 지역불균형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비수도권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더욱더 한국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북한이탈주민 결혼형태를 살펴보면 북한에서 부부가 함께 탈북한 가족, 한국에서 북한출신배우자를 만나 결혼한 가족, 한국출신남편과 결혼한 가족, 한국출신 아내와 결혼한 가족, 외국인남편과 결혼한 가족,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가족, 형제자매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가족형태는 서로의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남북하나재단(202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배우자 출신 지역은 여성의 경우, 남한이 45.2%, 중국 29.1%, 북한 25.3%, 기타가 0.3%이다. 남성의 배우자 출신 지역은 북한이 83.5%, 중국 9.0%, 남한 5.6%, 기타 1.9%로 보고 되었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형태가 일반인에 비해 훨씬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파악하고 그에 알맞은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가족형태가 다양한 것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자녀들도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출생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자녀들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북한에서 출생한 자녀,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 등 다양한 국가에서 출생하였으며, 이러한 것으로 부터 정체성 혼란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자신의 출신에 대해 어떻게 정리를 내려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체성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보다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한국사회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나 사회복지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별하여 조기에 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경로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의 가정폭력피해경험이 시공간에 관계없이 한국의 가정폭력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태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알맞은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2. 실천적 측면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 실천적 측면에 대해 제언하려고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가정폭력상담프로그램의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상담기관이 마련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용하는 자체만으로도 거리감을 느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잘 극복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또 다른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유고은 외, 2021)는 기존의 이론을 근거로 실천하기 위해서도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문제를 해결해야 할 급박한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상담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자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 상담원들은 기관의 문화와 시스템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창의성이나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었음에도 가정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방법을 찾고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상담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이탈주민들로 구성된 상담센터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한국사회 법제도와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

민은 북한의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양성과정 교육이 있었지만 남성들은 참여 할 수 없어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단순히 자격증을 소지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이런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하는 장이 될 수 있으므로 남성과 여성 모두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가정폭력관련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우선 ‘하나원’ 과 ‘하나센터’ 에서 한국사회 적응훈련을 받는 초기부터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한국사회에 유입되면 경제적인 활동에 주로 집중하면서 가정폭력과 같은 교육에 관심을 적게 가지거나 접근성도 부족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정착초기부터 가정폭력교육의 의무화를 실현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단순히 식량난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온 불쌍한 사람으로 간주하기보다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 탈북한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새 삶을 살기 위해 미래의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비롯하여 탈북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난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에 가두어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면 갈등과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북한전문가¹³⁾의 증언에도 있듯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정서적 폭력으로 시작하여 신체적 폭력까지 다양한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 적응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정폭력과 함께 성폭력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으며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 성폭력도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별개의 문제로 보기보다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서고 있다.

13) 북한전문가 강동완교수는 지인들에게 북한이탈주민을 아내 혹은 며느리, 사위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제시하였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고 진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과거에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경험에 대해 스스로 오픈하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공간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린 시절에 폭력적인 가정에서 성장했거나 북한에서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받은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김정순, 2013) 스스로없이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고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 받을 마음의 공간이 필요하다.

3.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나 첫째, 성폭력에 관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재북 시기와 제3국을 거치는 과정에 성폭력을 경험¹⁴⁾ 하였으며 한국에서 생활하는 과정에도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남성에 대한 한국사회적응에 대한 연구이다. 북한에서 남성의 지위가 여성보다 높은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사회에 편입된 북한이탈주민 남성들은 재북 당시 지위보다 한국에서 지위가 높아진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대비해 볼 때 한국사회적응에 훨씬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남성들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와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과제로 나선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지만 한국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관련

14) 박강우(2015). “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통권 제101호, 173-199.

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적응에서 가정폭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가정폭력과 관련된 개입전략을 세울 수 있다. 특히 북한에서 보다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경험이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둘째,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한국사회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개개인의 특성에 알맞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정착과정을 통하여 미래의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류를 정확하게 나눠보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면 엄마, 부모, 배우자, 형제 등 누구로부터 폭력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¹⁵⁾ 동시에 현재 남한의 가정폭력 가해자가 북한에서 가해를 한 가족인지, 남한에서 형성한 새로운 가족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둘째, 한국사회적응척도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알맞게 개조된 척도를 사용하면서 원척도와 문항내용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학력에서 북한의 학력과 남한의 학력을 분리하여 조사하는 과정에 남한에서 최종학력 문항에 “해당사항 없음”은 북한에서의 학력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학력과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다. 가정폭력 목격경험과 피해경험 외에도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유의가 필요하다.

15)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류를 정확하게 나눠보지 못한 원인은 설문문항이 길어지면 조사응답자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되었지만 논문을 연구하면서 이 부분에 좀 더 세부적인 분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가. 국내문헌

- 강창구(2016).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와 전망-취업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13(1), pp.3~22.
- 강효림(2008). “탈북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우울 불안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경미·김미영(2013). “북한이탈 남성주민의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경험”, 『한국간호과학회』, 43(3) pp.431-441.
- 김경숙(2016). “탈북여성의 가정폭력 경험과 트라우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기독교상담심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기창(2015).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1), pp.201-225.
- 김교현(2004). “한국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1), pp.55-68.
- 김명선(2015).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문화적응 결정요인의 통합적 고찰”, 단국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박사학위논문.
- 김민경(2009). “가정폭력노출 경험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숙(2010). “횡성군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강원: pp.87, 26.
- 김의남(2014). “사회적 지지와 적응유연성이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진로직업상담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정란·김혜신(2014).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4(2). pp.310-333
- 김창근(2011).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 동일교육”, 『윤리연구』, 80, pp.137-170.

- 김화순(2010).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이 인지하는 차별과 직업계층 변화에 대한 인식”, 『통일과 평화』, 2(2), pp.76-110.
- 김현진(2008).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2000).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pp.19-45.
- 김혜숙(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pp.1-33.
- 김희진·정윤경(2016). “북한이탈주민의 부부관계와 사회적응의 관계에서 자활효능감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51, pp.251-280.
- 권석만(2003).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나금희(2017).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경험 여성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자립생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논집』, 28집, pp.363.
-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서울: 2014-3.
- 남북하나재단(2022). 『2022년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 노인숙·원정숙(2009), “새터민의 우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응간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8(1), pp.69~77.
- 박강우(2015). “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형사정책연구』 26(1) 통권 제101호, pp.173-199.
- 박상미·김정민(2021). “가정폭력 피해경험,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및 정서강도가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6(1), pp.73~98.
- 박인선(2002). “가정폭력대응서비스의 과제”, 이화사회복지연구, 2:76-96.
- 박윤숙(2006).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미은(2000).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교회의 역할”, DBPIA - 디비피아 pp.41-45.

- 박정아(2007).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 박정순(2014).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 및 사회적 차별경험이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희(2012a). 『사회복지척도집』, 사회복지전문출판 나눔의 집, pp.93~94.
- 박정희(2004b). 『사회복지척도집』, 사회복지전문출판 나눔의 집.
- 박종철·김영윤·이우영(199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125, pp.159.
- 박종민·주호준·정영주·김현우(2022).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난 23년간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보았는가?”, 한국언론학보 66(1), pp.161~220.
- 박지원(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철민(2014). “개인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분석,” 『대한정치학회보』, 22(1), pp.31-63.
- 박혜숙·임선영(2016).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제신학, 18. pp.263-295.
- 변선숙(2021). “북한의 생활총화에 관한 연구-제도화와 기능 및 영향분석”,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배영미(2014).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체감된 폭력과 정체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4), pp.3~33.
- 서주연(2006).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선한승·강일규·김영윤·윤인진·이영훈·정성훈·김화순(2005). “북한이탈주민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성정현·김지혜(2021). “사회적 폭력경험과 자아존중감이 북한이탈여성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1).
- 설진배·송은희(2013). “북한이탈 여성의 자존감과 경제적 적응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평화통일학회』, pp.291-314.



- 손연우·권호인(2018).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파트너 통제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여성』, 23(3), pp.549~566.
- 손문경(200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송지현·이태영(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송진영(2015). “이주배경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연구”,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송진영·안귀일·문재우(2013). “장애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23(2), pp.5-23.
- 신민섭·오경자·홍강의·김해숙(2004). “가정폭력이 배우자 및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3(3), pp.611-636.
- 신나래(2015).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취업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쉼터거주여성의 생애사건을 중심으로”, 『가족문화』 29(3), pp.77~110.
- 생명과 평화공동체 사람들(2018). 『생사의 갈림길에서 맞이하는 삶의 기억』, 부산: 다른경제협동조합, pp.153.
- 양정훈(2001). “새터민의 새로운 환경 적응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8, pp.431-466.
- 양정훈(2005). “북한사회의 폭력성이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4), pp.607~630.
- 양옥경(1996).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울: 나남출판.
- 엄태완(2004).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에 의한 우울증 완충효과에 관한연구”,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여현철(2015).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사상과 문화』, 18(3), pp.325-359.
- 여성가족부(2009). “탈북여성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재단』.
- 오혜정(1995). “귀순 북한동포의 남한사회적응 실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 서강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 우주은(2005). “자유이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족관계 및 인구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시연(200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유고은·이창배(2021).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시큐리티연구, 66호 pp.291-318.
- 윤여상(2002).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민관협력 방안”, 『통일문제 연구소』, 24, pp.65-100.
- 윤여상·윤인진·이금순·안혜영·서윤환·엄홍석(2005). “2005년도 새터민 정착실태 연구”, (사)북한인권정보센터.
- 윤인진·길은배·박영희·엄홍석·윤여사·채정민(2005). “새터민 여성·청년 실태조사 보고서”, (사)북한인권정보센터.
- 윤인진(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33, pp.511-49.
- 윤미숙(2021). “가정폭력의 이해” 가정폭력상담원 과정.
- 원영희(2005). “노인차별 피해경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1(4), pp.319-339.
- 이민영(201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착 지원에 관한 연구 동향분석: 통합적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회』, 2015(1), pp.38-68 .
- 이은정(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 척도 개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은희(2004). “대학생들이 경험한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한국심리학회지』, 9(1), pp.25-48.
- 이금순(2006). “여성이주자의 사회적응과정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5(1), pp.191-234.
- 이근명(2008). “아내폭력 재피해 경험이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 지지관계망의 조절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6(8).
- 이소래(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신옥(2003). “가정폭력경험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우영·이금순·서재진·전현준·최춘흠(2000).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 총서 2000-06, pp.1
- 이인회(201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애란(2010). “왜 북한의 여성탈북자가 많은가?”, 『한국논단』, 249, pp.118-123.
- 이규환·김영민·양명재·최영순·고은애·이광자·김지영(2007).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과 우울에 관한 연구”, 『이화간호학회지』, pp.14-22.
- 이규창·김수경·이지순·정은미·임예준(2020). 『북한인권백서2020』, 통일연구원, pp.191.
- 이명순(2016).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우울증과 심리치료”, 한국신천신학회, 2016(51), pp.355~376.
- 이소래(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연숙·이경희·오진영(2021).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이 결혼 및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지지 매개효과”, 디지털복합연구, 19:2, pp.253-264.
- 인진미(2006). “노인의 지역사회 참여 요인”, 부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임소희(201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 예측모형: 심리적 외상-회복력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임강택(2013).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KINU 연구총서 13-11, pp11.

- 장경영(2008). “새터민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아동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명선·이애란(2010). “북한이탈주민여성의 취업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 『평화문제연구소』, 22(2), pp.275-319.
- 장혜경·김영란·(2000).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240(13), pp.1-252.
- 전숙이·손철우(2018).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 치료수강명령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보호관찰, 18(1), pp.161~208.
- 정영희(2019). “미술치료적 접근을 통한 북한이탈여성의 한국사회정착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구사이버대학교 미술상담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윤경·김희진(2014).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과 적응의 관계-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매개효과 분석”, 『사회복지연구회』, 45(4), pp.143-167.
- 정윤경·김희진·최지현(2015). “북한이탈주민의 차별경험과 적응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31, pp.157-182.
- 정은주(20220),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우울과 불안 감소를 위한 마음챙김 기반 미술치료: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27(6), pp.1257~1274
- 조동운(2015).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2호. pp.427~450.
- 조정연(2013).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방안으로서 통일리더 양성과제”, 서울: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아(2011). “북한이탈주민의 차별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12(1), pp.1-19.
- 조성희·성정현·신은주(2019). “북한이탈여성의 가정폭력피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역사문화학회.
- 천보경·금명자·박찬호(2018).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학습된 무기력과 자립 의지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 18(11), pp.449-457.
- 채나리(2012). “북한이탈주민의 문화변용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채정민(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문화적 적응 기재와 적응형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민영 · 이기영 · 김정진 · 최현미(2015). 『다문화사회복지론』, 서울: 학지사, pp.64-66.
- 최연우(2022). “북한이탈주민의 젠더차별도가 가정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 젠더관점의 매개효과”, 신한대학교 남북협력복지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의철(2002). 『북한인권과 유엔 인권레짐: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연구총서 02-06, pp1.
- 편송경(2009).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한만길(1996). “탈북 이주자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재사회화 방안”, 『통일연구논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5(2), pp.215-238.
- 홍창형(2005).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한 3년 추적연구”, 연세대학교 의학과 석사학위논문.

나. 외국어 자료

- Allport, G. W. (1958). “The nature of prejudice”, Addison-Wesley.
- Barrera, M. 1986,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No. 14(4), 413_455.
- Beck, A. T.(1967).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Padilla (Ed.)",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Findings* (201-234).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Berry, J. W. Kim, U. Thomas M. & Doris, M. (1987). *Comparative*

- Studies of Acculturation Stress*. IMR 11(3), 491–510.
- Berry, J. W. Kim, U. Power, S. Young, M. & Bujaki, M. (1989). Acculturation attitudes in plural societies, *Applied Psychology*, 38, 185–206.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6, 300–314.
- Cohen,S. & Wills, T.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57.
- Gorden, M.M.(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Ontario, CA: Oxford Press.
- Gelles, R.J.& Straus, M.A.(1979). "Determinations of Violence in the Family: Toward a Theoretical Integration",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W. Burr, R. Hill, Reiss(eds.), The Free Press.
- Jackson, J. S. Brown, K. T. & Kirby, D. C. (1998).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prejudice and racism." In Eberhardt, J. L. & Fiske, S. T. (Eds.). *Confronting Racism: The Problem and the Response*. 101–135. Sage Publications.
- Montgomery, E. & Foldspang, A. (2008). "Discrimination, mental problems and social adaptation in young refugees", *The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18(2), 156–161.
- Martin, J. K. Blum, T. C. Beach, S. R. H. & Roman, P. M. (1996). Subclinical depression and performance at work,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1(1), 3–9.
- Radloff, L, S.(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다. 기타 자료

- 경북일보(2011). “부부라도 폭행·협박으로 성관계 할 권리 없다,”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4478>.
-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c.do?menuId=1&dt=20201211&query=%EB%B6%81%ED%95%9C%EC%9D%B4%ED%83%88%EC%A3%BC%EB%AF%BC&subMenuId=15#undefined>.
- 남북하나재단(2023). <http://www.koreahana.or.kr/eGovHanaMain.do>.
- 동아일보(2023). “영화 크로싱의 실제인물 유상준씨의 삶[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203/117728491/1>.
- 대경일보(2023). “고난의 행군보다 더 심한 기아...주민들 ‘전쟁이라도 낫으면’ ”,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217>.
- 문화일보(2010). “탈북자 부부 신체폭력 일반가구의 3배,”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122801070327258006>.
- 분당신문(2016).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예방 지금부터나서야,” http://www.bundangnews.co.kr/sub_read.html?uid=12428.
- 서울신문(2005). “탈북여성들: 인권이 뭐가요”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50810007011>.
- 세계일보(2004). “탈북자 범죄 해마다 증가/폭력 절도가 절반차지”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643527>.
- 어학사전(2023). “적응,” <https://dict.naver.com/search.nhn?query=%EC%A0%81%EC%9D%91%EC%9D%B4%EB%9E%80&ie=utf8>.
- 연합뉴스(2022). “17년차 탈북민 요양보호사 고난의 행군 가슴에 비수처럼 남아,” <https://www.yna.co.kr/view/AKR20220731056200005?input=1179m>.

- 연합뉴스(2021). “여가부, 탈북여성 폭력피해 실태조사 4년만에 재개”, <http://www.yna.co.kr/view/AKR20210917152500530>.
- 통일부(2020), “북한으로 부터 수재물자 지원을 받은 역사가 있다?,” <https://blog.naver.com/gounikorea/221835838340>.
- 통일백서(2012).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 “탈북 영종업원 근무 북한식당, 중 산시성 웨이난시 위치” <http://www.unikorea.go.kr/search/front/Search.jsp>.
- 통일부(2023). “북한이탈주민정책 정책자료실”, <http://www.unikorea.go.kr>
- 평화문제연구소(2016). “북한이탈주민 통일미래의 동반자”,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2016.5.21\)](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2016.5.21))
- 한경사회(2010). “가정폭력 6가구당 1가구...다문화, 북한이탈주민은 심각,”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012286733i>.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22). “실향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33696>.

Abstract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Impact on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by Hu, Young-He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Area,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Silla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existence strategy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adapt to South Korea. The experience of witnessing domestic violence in North Korea and the experience of being victimized has a negative impact on Korean social adjustment and the experience of damaging domestic violence in South Korea. It is designed to raise labor efficiency.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North Korean defectors aged 20 or older living all over the country, and the sampling method was significant sampling, and data were collected for two months from January to February 2023 throug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Of the 389 copies of the distributed questionnaire, 350 cop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luding those with insincere responses.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cross-tabulati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program, and the Sobel test was conducted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of domestic violence victim experience in South Korea.

As a result of frequency analysis to find ou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defectors, 83.4% (292) of the 350 were female and 16.6% (58) male. By age, 41.4% (145 people) were in their 40s, followed by 50s with 32.9% (115 people), 30s with 15.4% (54 people), 60s with 27.5% (25 people), and 20s with 3.1% (11 people).) appeared in rank. As for the type of marriage, 185 people (52.9%) were married or cohabitating, followed by divorce, separation, or bereavement (125 people (35.7%)), followed by 40 people (11.4%) who were single. appeared as. The most common family members of North Korean defectors are spouses and children (29.1%, 102 people), followed by children (26.9%, 94 people), the person alone at 21.1% (74 people), and spouses at 17.1% (60 people). persons), 4.0% (14 persons) with parents, and 1.8% (6 persons) other.

In the descriptive statistics on domestic violence experiences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in North Korea (62.9%, 220 people) was more than the experience of witnessing (44.9%, 157 people), and the victim experience in South Korea was 72.0% (252 persons) of the total respondents showed that the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in South Korea was about 10% higher than that in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in this study, first, the experience of witnessing domestic violence in North Korea and the experience of being victimized had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social adaptation to South Korea.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witnessing and victimization of domestic violence in North Korea, the lower the social adaptation to South Korea. Second, witnessing and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in North Korea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domestic violence victim experience in South Korea.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witnessing and

victimization of domestic violence in North Korea, the higher the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victimization in South Korea.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in South Korea had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Korean social adaptation.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in South Korea, the lower the Korean social adjustment.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in South Korea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witnessing and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in North Korea and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This mean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 of witnessing and being victimized by domestic violence in North Korea indirectly affects their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through their experiences of being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in South Korea.

Through thes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s of witnessing and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in North Korea are highly likely to lead to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in South Korea, which in turn has a negative impact on social adaptation to South Korea.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an intervention plan for domestic violence was suggested as a way to improve North Korean defectors' adaptation to South Korea.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experience of witnessing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부록: 설문지

※.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북한이탈민의 경험으로부터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각의 질문은 특정한 정답이나 좋은 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본 조사에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의 결과는 여러분의 안정적인 남한생활 적응을 위해서 그리고 정착 지원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정책을 보완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부탁드릴 것은 질문에 대한 **응답이 빠져있게 되면 자료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귀한시간을 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니 자신의 생각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지역학과 지도교수 : 강경태

박사논문 연구자 : 허영희

I. 다음 질문은 귀하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에게 가장 일치되는 곳에 √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회적 활동에 잘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남한의 문화에 적응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직업 및 현재 생활에 만족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남한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남한사회의 법·제도에 잘 적응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에게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과 접촉을 꺼릴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남한에서 사용되는 낯선 언어(한자어나 외래어)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9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대한 적대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떠나온 사실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4	현재 수입으로 생활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5	의료비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룬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부모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귀하가 복한에 있을 때 아동기 시절 아래와 같은 행동을 몇 번이나 보았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 √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 항 내 용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없음	2~3년에 한두번	일년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주1회 이상
1	모욕적인 말이나 심한 말을 했다(정서)	①	②	③	④	⑤
2	물건을 부수거나 집어던졌다(정서)	①	②	③	④	⑤
3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경제)	①	②	③	④	⑤
4	수입과 지출을 통제했다(경제)	①	②	③	④	⑤
5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통제)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통제)	①	②	③	④	⑤
7	때리거나 다치게 하였다(신체)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부모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귀하가 남한에 있을 때 아동기 시절 아래와 같은 행동을 몇 번이나 보았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 √를 해주십시오.

-

번호	문 항 내 용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없음	2~3년에 한두번	일년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주1회 이상
1	모욕적인 말이나 심한 말을 했다(정서)	①	②	③	④	⑤
2	물건을 부수거나 집어던졌다(정서)	①	②	③	④	⑤
3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경제)	①	②	③	④	⑤
4	수입과 지출을 통제했다(경제)	①	②	③	④	⑤
5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통제)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통제)	①	②	③	④	⑤
7	때리거나 다치게 하였다(신체)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 질문은 북한에서 귀하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귀하가 받았던 몇 가지 일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에게 가장 일치되는 곳에 √를 해주십시오.(가정 폭력 경험)

번호	문항내용	부모, 형제, 배우자가 나에게				
		없음	2~3년에 한두번	일년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주1회 이상
1	모욕적인 말이나 심한 말을 했다(정서)	①	②	③	④	⑤
2	물건을 부수거나 집어던졌다 (정서)	①	②	③	④	⑤
3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경제)	①	②	③	④	⑤
4	수입과 지출을 통제했다(경제)	①	②	③	④	⑤
5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통제)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여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통제)	①	②	③	④	⑤
7	때리거나 다치게 하였다(신체)	①	②	③	④	⑤
8	성관계를 강요했다(성학대)	①	②	③	④	⑤
9	이플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적이 있다(방임)	①	②	③	④	⑤

V. 다음 질문은 남한에서 귀하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귀하가 받았던 몇 가지 일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에게 가장 일치되는 곳에 √를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내용	부모, 형제, 배우자가 나에게				
		없음	2~3년에 한두번	일년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주1회 이상
1	모욕적인 말이나 심한 말을 했다(정서)	①	②	③	④	⑤
2	물건을 부수거나 집어던졌다 (정서)	①	②	③	④	⑤
3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경제)	①	②	③	④	⑤
4	수입과 지출을 통제했다(경제)	①	②	③	④	⑤
5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통제)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여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통제)	①	②	③	④	⑤

7	때리거나 다치게 하였다(신체)	①	②	③	④	⑤
8	성관계를 강요했다(성학대)	①	②	③	④	⑤
9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적이 있다(방임)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나이는? _____ 살

3. 귀하의 북한 최종학력은?

- ① 무학 ② 초등학교(인민학교) ③ 중·고등학교
④ 기술학교(전문학교 포함) ⑤ 대학이상

4. 귀하의 남한 최종학력은?

- ① 해당사항 없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재학중 포함)
⑥ 대학원(재학중 포함)

5. 귀하의 종교는?

- ① 기독교 ② 불교 ③유교 ④천주교 ⑤종교 없음 ⑥ 기타(_____)

6.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 형태는?

- ① 영구임대아파트 ② 월세 ③ 전세 ④ 자가 ⑤ 전/월세 ⑥ 기타(_____)

7. 귀하의 현재 직업은?

- ① 학생 ② 주부 ③ 개인사업/자영업 ④ 일일노동자 ⑤ 전문직/관리직 ⑥ 회사원

⑦ 무직 ⑧ 기타(_____)

8. 귀하의 건강상태는?

아주 건강하다	대체로 건강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건강하지 않다	아주 건강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9. 귀하의 현재 가족 형태는?

본인 혼자	배우자 같이	자녀와 같이	배우자와 자녀 같이	부모와 같이	형제와 같이	부모와 형제와 같이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0. 귀하의 현재 결혼관계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별거 ⑥ 동거 ⑦ 기타(_____)

11. 본인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 ③ 차상위계층
④ 법정 한부모가정 ⑤ 해당사항 없음

12. 현재 가족의 월수입은? _____ 원

13. 남한에 입국하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_____ 년

14. 북한을 떠나 한국에 오기 전 까지 중국이나 기타 제3국에 머문 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3년 미만 ③ 5년 미만 ④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15. 귀하가 남한사회에 살면서 힘들 때면 누구에게 주로 도움을 받으십니까?

①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또는 친척(공동체가족 포함)
② 입국 시 도움을 준 사람
③ 북한친구(탈북과정에서 또는 남한입국 이후 만난 북한친구)
④ 남한친구



- ⑤ 정부 및 민간단체
- ⑥ 종교인
- ⑦ 기타(_____)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빠뜨린 문항이 없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